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송경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의 경향	10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9
제2장 탈북의 배경 및 경로	21
제1절 사회이탈행위의 개념	21
1. 북한의 사회적 규범	21
2. 일탈의 사회적 논의	24
제2절 탈북의 주요 원인	26
제3절 탈북의 경로 및 유형	28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	31
제1절 탈북자 현황	31
1. 재외탈북자	31
2. 국내 입국 탈북자	35
제2절 정부의 지원체계	41
1. 초기 입국단계	44
2. 시설보호단계	44
3. 정착지원 및 사후지원 단계	49
제3절 사회적응 실태 및 문제점	62
1. 사회·심리적 적응실태와 문제점	62

2. 경제적 적응실태와 문제점	66
3. 정착지원 실태와 문제점	74
4. 보안경찰의 신분보호 실태와 문제점	77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 방안	81
제1절 초기교육 강화	81
제2절 정착 지원방안 개선	84
1. 정착지원금	84
2. 취업 및 주거지원	85
3. 교육 및 사회보장지원	88
제3절 심리적 불안정 해소	89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관리	91
제5장 결론	95
참고문헌	100

표 목 차

<표 1-1> 북한이탈주민 관련 석·박사학위논문(1997~2008년)	11
<표 2-1> 주민성분조사사업	22
<표 3-1> 언론이 공개한 대사관 및 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진입사건	36
<표 3-2> 연도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	37
<표 3-3> 북한이탈주민 처리과정과 소관부처	43
<표 3-4> 정부의 정착지원시설(하나원) 현황	45
<표 3-5> 시기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내용	50
<표 3-6> 정착지원금	51
<표 3-7> 정착장려금	52
<표 3-8> 정착가산금	53
<표 3-9> 2008년 현금급여 지급 최고액	57
<표 3-10>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60
<표 3-11> 취업자의 근속기간	67
<표 3-12> 입국시기별 취업자의 근속기간	68
<표 3-13> 북한이탈주민 노동가능인구 수(2008년도 기준)	69
<표 3-14> 주거형태	71
<표 3-15> 가족 전체의 월수입	72
<표 3-16>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도	7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북한은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김정일 정권의 총체적 위기¹⁾는 주민들의 대대적인 탈북요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더구나 식량공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인구의 유동성 증가는 관료기구의 기능 약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주민들의 물질적 결핍과 생활고는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물질적 가치와 경제적 풍요 등을 중요시하는 자아중심의 개인 지향적 가치관과 실리주의적·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변화를 보이면서 대량탈북²⁾으로 이어졌다.

현 시기 탈북자³⁾의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것

- 1) 대외적으로는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변화, 북미·북일 관계 악화, 한국의 북방정책의 가시적 성과 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정통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의 동요를 가져왔으며 통치력의 약화와 경제난에 봉착하는 한편 국가기강의 해이되었다. 또한 부정부패와 범죄의 증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 저하를 비롯하여 사회의 체제이완과 사회일탈이 가속화되었다. 송경호, 『김정일 체제의 위기 실태와 향후 전망』(경기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07 책임연구보고서), 23~44면.
- 2) 탈북자들은 대부분이 조선족 동포사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을 통해 식량을 구입하여 가족들에게 조달하는 재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탈북이 장기화되고 확산되면서 북한의 통제와 중국의 대대적인 단속에 직면하였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을 우려하여 남한행을 선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전문 브로커와 알선단체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내입국이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호칭을 탈북자(해외거주자및 북한을 탈출한자의 총칭)와 북한이탈주민(국내 입국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 3) 탈북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의 호칭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도망자, 배신자, 이탈자 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합한 호칭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북한은 탈북자들을 ‘인민을 배반한 사회주의 배신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

은 탈북자 대부분이 제3국에서 은신생활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관련국들이 북한과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말미암아 탈북자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자의 약 80% 이상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지역의 주민이고, 이 지역의 인구가 497만 명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의 수는 약 3만 명 선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된다.⁵⁾ 이러한 수치는 이 지역 주민 약 40% 정도가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의 학생임을 감안할 때 성인 인구 1%에 해당되는 것이며, 40세대 당 1명 정도가 북한지역을 탈출하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 중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⁶⁾이 1만 5천명을 넘어섰고,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몽골 등 기타 동남아 국가들에 약 1만 5천명이 은신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탈북자들은 제3국에서 불법체류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은신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로부터 불법체류 신고 등으로 체포당하고 각종 노동력을 착취와 인신매매를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최근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난사람’, ‘깡사람’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윤여상, “재외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8), 9면. 탈북자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호보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월남자, 이북실향민,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탈북자, 탈북동포, 탈북인사, 월남이주민, 북한이탈주민, 탈북정착민, 북한이주민, 자유이주민, 자유북한인, 새터민, 자유민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왔다.

4) 청진시 85만 명, 함경북도 127만 명, 함경남도 285만 명,

5) 한국 정부는 1~3만 명,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2~3만 명, 기타 NGO 단체들에서는 10~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6)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따라서 중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동포와 북한에서 발급한 해외국민증과 중국에서 발급한 외국인거류증을 소지한 이른바 조교, 북한에 귀화한 외국인, 재일조총련은 북한이탈주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탈북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며,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주변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들의 생존권·신변안전·인권·국제난민지위부여 문제⁷⁾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조용하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⁸⁾

당사국인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 이전까지만 하여도 탈북자에 대해 ‘반역죄’를 적용⁹⁾하였으며, 1990년대 말부터는 식량문제 해결 등 일반적 탈북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반면에 성향이 불량한 탈북자¹⁰⁾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¹¹⁾

1995년 국경지대를 ‘전선지대’로 선포하고 제10군단을 창설하는 등 국경 경계근무를 한층 강화시켜 왔다.

또한 국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국 배반자의 실태”¹²⁾라는 비디

7) 이금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정책과제”, 『한반도 군비통제』(군비통제자료 35, 2004년 6월), 151~183면.
8) 정부는 「재외공관에서의 귀순·망명요청자 등에 관한 처리지침」에 의해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선별적으로 처리하여 왔다. 특히 탈북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과 관련국가, 탈북자 모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데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다.
9) 정치범으로 간주하면서 정치범수용소에서 특별관리 하거나 공개처형하였으며, 가족들은 통제구역으로 강주이주 하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10)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반체제활동 가담자 등.
11) 탈북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비공식적 체포활동 및 탈북자 방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주민의 이탈 제재를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1993년부터는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성) 경비대 외에 인민무력부 병력을 국경지역에 증강하여 국경경비를 강화하였다. 1998년 개정헌법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배반죄’(구헌법 제86조)를 삭제하고 탈북자 처벌을 완화하였으나, 1999년 이후부터는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키면서 남한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여전히 정치범에 준한 강한 처벌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 북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귀순자는 정보를 캐낸 후 잔인하게 살해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를 상영하여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 사상적 통제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미국은 탈북자 문제를 북한 체제의 산물로 보고 있다. 탈북자 문제를 인권문제화 하고,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대북결의안으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2004년 7월 21일 미국 하원은 북한 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만장일치로 채택¹³⁾ 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탈북자 문제를 민감한 정치·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탈북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조교’나 ‘탈북자 체포조’의 활동을 묵인하면서 이들을 북한에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의 처리방식은 「밀입국자 송환협정」(1960년대 초 체결), 「국경지역업무협정」(1986년 체결), 「길림성변경관리조례」(1998년 적용)에 따르고 있다.”¹⁴⁾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의 탈북자 체포활동을 묵인하는 등 탈북자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다.

탈북자 처리방식은 북한과 구소련 간에 체결된 「비밀의정서」에 따라 현지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에는 신병을 북한으로 인계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한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적으로 탈문자 문제에 협조하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

13) 본 법안의 제정은 김정일 절대권력 하에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요당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북한에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북한 난민 문제에 대한 인도적이며 지속적인 해결, 대북 인도적 제공과 관련된 감시, 접근, 투명성 증대 촉진, 북한에 대한 국내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촉진,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한반도 통일달성 촉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4)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서울 :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99-02), 6면.

다.” 15)

탈북자들의 주요 탈북 동기로는 198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정치적 갈등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에 따른 정치적 성격의 정치·사상적 동기와 신변상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대량탈북¹⁶⁾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식량난 등 경제적 성향의 어려움이 주요 동기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 이후 기획탈북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배고픔의 차원을 넘어 좀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제3국 또는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동반의 탈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자식들을 더 좋은 곳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한국행을 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7)

탈북자의 국내 입국이 2만 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¹⁸⁾의 한국사회 성공적 정착문제는 국가와 국민, 사회전체가 새롭게 해결해 나가야할 절박하고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초래한 문제이면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이자 한반도 통일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인류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일탈행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발생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사회에 일탈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에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회적 일탈행위란 인간 자신들의 지위에 부과된 규범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어떤 행위가 일탈인가는 사회마다

15) 이금순, 위의 책, 6~7면.

16) 1995~199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남.

17) 「동아일보」, 2002. 8. 17.

18)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부족과 수용시설의 미비, 신변보호를 위한 경찰인력의 업무과중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상의하다. 대부분의 이탈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범하는 이탈행위를 합리화하면서 그가 범하는 규범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¹⁹⁾

특히 “북한에서 대규모 이탈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생활기회에서 불평등과 북한경제의 원천적인 낙후성으로부터 기인된 주민들의 불만과 생활양식에 따른 주민욕구의 심화”²⁰⁾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과거 정부의 성향(군사정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과 그들의 활용가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차별화를 보여 왔다.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였다.²¹⁾ 그것은 이들에 대한 호칭이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호칭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문제는 자립의지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취업문제와 심리적 불안정, 범죄의 증가 등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기존의 보호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자립·자활중심

19) Robert K Merton & R, Nisbet (ed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pp.824~830.

20) 유석렬, “일탈 : 원인·유형·통제방법”,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 65면.

21) 냉전시대 하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1993년 12월까지 월남귀순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지위에서 641명(2008년 12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약 4.3%)이 지원을 받았다. 1993년 12월부터 1997년 7월까지 235명은 생활보호자 지위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1997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14,124명은 통일대비 보호가 필요한자의 지위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서비스 혁신단, 『새터민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방안(안)』(노동부, 2007), 24면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참조.

으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종합적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미진한 상황에서 이들을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그것은 이들의 생활수준이 한국사회의 최하위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 분단이 빚어낸 이질화와 북한의 획일화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살아왔다. 한국으로 입국하여 다양화된 한국의 시장경제체제를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습관 등 문화적 차이를 쉽게 극복해 나가고 있지 못하다.

또한 경제적 차이와 상호이해의 부족, 편견 등으로 인해 정치이념이나 사상, 제도적 차이, 언어와 지역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의 문제는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과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적응노력의 부족, 한국사회와 국민의 편견과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정착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로부터 편견과 차별로 소외된 이등국민으로 낙인 되어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하였다는 이유로 과소평가되고 차별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한국 국민들과 융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은 자신들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2003년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780명 중 취업률은 39.8%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74만원에 이르는 빈곤층으로 파악되었다.”²²⁾

최근에는 한국사회의 적응이 어려워 재입북 하였던가 다시 재탈북 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1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위장 탈북과 간첩활동 여부로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²²⁾

인간 사회에서 “진정한 삶이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라고 전제하여 볼 때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편견과 외면, 부정적 시각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7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북한 국민들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인간적이고, 제도적, 사회적 포용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탈북자 문제는 정부와 한국 사회가 헌법정신²⁴⁾에 입각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여과 없이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이들의 성공적 사회정착이 통일 후 사회통합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점검해야 할 절박성으로부터 정부가 탈북사태를 대북전략과 관련하여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 인가의 문제를 제기”²⁵⁾하고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 대북·통일정책의 틀과 타임 테이블을 갖추어 나갈 것”²⁶⁾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야기될 문제를 미리 학

22) 「중앙일보」, 2004. 7. 28.

23) 「동아일보」, 2005. 6. 5.

24)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밝히고 있으며, 제2조 제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25) 김현호, “북한이탈주민 탈북사태의 원인과 대책”, 『북한은 변화할 것인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세미나 주제발표 논문, 1996. 3. 25), 1~2면.

26) 오기성, “통일대비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문제연구”, 『공안연구』 제9권 제2호(경기 : 공안문제연구소, 1977), 43~44면.

습하는 과정이며,” 27) “한국사회가 통일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수립과 사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이들의 탈출배경과 정부의 정착지원 실태,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개선방안과 보안경찰의 효율적 신변보호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7) 박종철 외 2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66), 118~119면.

28) 이장호, “북한이탈주민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상)”, 『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1997년 11월호), 174면.

제2절 선행연구의 경향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주요 연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²⁹⁾

그러나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던 1990년대 들어서 국내 대학들의 “북한학과”가 개설되면서 북한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고조되어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전공분야³⁰⁾의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가 본궤도에 들어섰다.

선행연구를 분석 검토한 결과 크게 두 가지 방향 즉,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와 재외 탈북자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전자의 경우 한국사회 적응 실태³¹⁾와 관련한 논제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재외탈북자의 실상과 법적 지위, 인권문제를 주요 논제로 다루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은 총 21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62건, “정부의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36건,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인권관련 연구” 22건, “선교 및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 각각 17건, “심리와 건강에 관한 연구” 11건, “탈북자 가족 및 보안경찰의 신변관련 연구” 각각 4건, 기타 42건으로 나타났다.

29) 1989년 현재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607명으로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철저한 보호아래 생활하여 왔다.

30) 정치학, 경제학, 법학, 심리학, 교육학, 행정학, 북한학, 인류학, 사회복지학, 의학 등

3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실태와 정부의 지원정책(정치 사상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 심리적 측면), 개선방안 등에 역점을 둔 것이다.

<표 1-1> 북한이탈주민 관련 석·박사학위논문(1997~2008년)

연도 주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사회 적응	1	1	5	5	5 (1)	4	10 (1)	7 (1)	11 (1)	9 (1)	2	2	62 (5)
정착 지원	1		1	1	1	4	5	10 (2)	5	1	5	2	36 (2)
인권		2			2	4 (1)		7 (1)	1	3	3		22 (2)
선교					1	3		1	4	5	2	1	17
신변 보호		1						2		1			4
가족						1		1		1	1		4
심리 건강				1			2	3	3	1 (2)		1	11 (2)
청소 년							1	5	4	6		1	17
기타		1	3	1	1	4 (1)	6 (1)	3 (2)	5 (1)	12 (4)	3	3	42 (9)
총계	2	4	9	8	10 (1)	20 (2)	24 (2)	39 (6)	33 (2)	39 (7)	16	11	215 (20)

※ 출처 :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 참조.

기존의 연구 경향과 주요 성과물들을 주제별·연구자 중심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부적응에 관한 연구” 이다.

대표적 연구자로는 조용관, 윤인진, 윤여상, 김영수, 안혜영, 정영구, 한만길, 송경호, 김영만 등을 들 수 있다.³²⁾

이들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정치사상·경제·심리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회적응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치사상적·심리적 측면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특히 「하나원」 퇴소 이후 취업 문제의 절박함과 국내 기업들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회피, 직장에서 동료간의 의사소통문제, 한국 국민들의 편견과 무관심,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와 개선방안에 역점을 둔 연구”이다. 임정규, 김경호, 김주삼, 윤여상, 김경수, 김성윤, 김치영, 박현선, 정경환, 이종훈, 서운환, 백영옥, 이호진, 박상봉, 홍양호, 정주신, 김학성 등으로 대표된다.³³⁾

32) 윤인진, “북한이탈주민 적응은 민족통합의 과제”, 『자유공론』 제450권(서울 : 자유총연맹, 2004) : 윤여상,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김영수·정영구, 『탈북귀순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서울 : 통일연수원, 1996) : 한만길, “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제5권 2호(1996) : 조용관,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과 통일의 과제”, 『통일문제의 국제관계』 제11집(1999) : 김영만,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자(새터민)들의 적응실태』(경기 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2005) : 송경호, “탈북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개선방안” 『공안연구』(경기 용인 : 공안문제연구소, 2001).

33) 임정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정경환 편, 『북한인권문제의 실제적 해부』(부산, 이경, 2006) : 김주삼, “북한 이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통일전략』 제6권(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서울 : 세명, 2001) : 김경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정착정책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성윤, “새터민 정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동북아논총』 38(서울 : 한국동북아학회, 2006) : 김학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연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치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정책과 민간단체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제3권 2호(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

이를 연구자들은 정부의 체계적인 정착지원 체계(정착지원금, 취업, 교육, 의료, 신분보호 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지원금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이 받고 있는 정착지원은 한국 국민들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특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가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 대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을 모색하여 왔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실태가 최하위계층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탈북자의 인권문제와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조백기, 윤여상, 김명기, 손주환, 이종훈, 제성호, 최창동, 임태근, 이금순, 길강섭 등을 들 수 있다.³⁴⁾

박현선,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1호(서울 : 북한연구학회, 2002) : 이종훈, “남한 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분석』 제119호(1996) : 서운환, “탈북자 정착지원종합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북한학회보』 2000. 11(서울 : 북한연구학회, 2000) : 김정호, “새터민 정착지원체계의 대안적 모색” 『대한정치학회보』 13(3)(서울 : 대한정치학회, 2006)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대책방향』(서울 : 국회, 1998) : 백영옥, 『북한이탈주민 대책연구』(경기 성남 : 세종연구소, 1998) : 이호진, “최근의 탈북자 현황과 정책”, 『외교』 53(2000) : 박상봉, “대량탈북 사태와 국가대응전략”, 『군사세계』 통권 84호(서울 : 21세기군사연구소, 2002) : 홍양호, “탈북자 정착지원의 기본방향” 『북한』 356(서울 : 북한연구소, 2001) : 정주신, “국내의 탈북자 실태와 정부의 과제 :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제3권 제2호, 2003.

- 34) 조백기, “국제법상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국제법상 지위를 중심으로”(한국해양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윤여상, 『재외 탈북자』(서울 : 열린포럼21, 2001) : 김명기,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보호 및 실효적 지원방안(1999) : 손주환, “북한이탈주민은 국제법상 난민이다”(1999) : 이종훈, “탈북자 난민지위 획득방안 및 실천방안”(2000) : 제성호, “북한탈출 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1994) : 최창동, “탈북자의 법적 지위”, 2002 : 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법학』 17, 2000 : 이금순, “탈북자의 인권현황과 국제사회의 역할”, 『이제는 북한인권을 말해야 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 심포지엄, 2005. 9. 23) : 길강섭, “북한이탈난민의 귀환대책에 관한 연구”(서울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들 연구자들은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사회·윤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재외탈북자들이 다양한 범죄에 연류(단순절도, 밀수, 인신매매, 살인 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제노동과 감금, 폭행, 매춘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직시하면서, 중국공안의 감시와 체포,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문제 등 탈북자 인권 유린행위를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탈북자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지원을 호소하여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여 보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북한이탈청소년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 연구자들은 유지용, 박일권, 이선화, 정우창 등을 들 수 있다.³⁵⁾

이들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국내 입국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수업과 학우들과의 의사소통 단절, 사회 이탈이 심화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화된 교육지도 프로그램(대안학교 등)의 기회를 부여시킬 것과 취업을 원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여 직업훈련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 연구자는 신은철, 양상완, 김훈, 장상익 등을 들 수 있다.³⁶⁾

35) 유지용,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부적응과 이탈”, 『민주사회연구』(경기 용인 : 공안문제연구소, 2005) : 박일권, “탈북 청소년 적응과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선화, “북한이탈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업성취방안 연구”(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우창, “탈북 청소년을 교육하는 남한 자원교사들의 갈등과 적응”(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6) 신은철, “새터민 신앙 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방안 연구”(아시아연합 신학대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양상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교회의 역할 연구”(침례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훈,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정착과 한국교회의 선교”(아시아연합신학대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장상익,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선교전략 연구 : 국내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협성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이들 연구자들은 교회사회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적영역의 지원 체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제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자는 이금순, 전우택, 박종철, 김중태 등을 들 수 있다.³⁷⁾

이들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변위협과 부모형제에 대한 죄책감, 사회부적응, 국민의 무관심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자포자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일신상의 문제, 불안과 소외감, 우울증, 정체감의 혼란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치유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곱째,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이다. 조용관, 전우택, 이하섭, 김광호 등을 대표적 연구자로 볼 수 있다.³⁸⁾

이들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에서 첫 출발이 보안경찰의 신변보호와 함께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경찰의 탈북자 지원체계와 현황을 검토하였다.

논문, 2002).

37)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프로그램 연구”(서울 : 통일원, 2005) : 전우택 외, “탈북자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서울 : 오름, 1996) : 박종철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중태, “탈북후 국내적응 훈련의 현황과 실태”, 『시민과 변호사』 통권 104호(2002).

38) 조용관, “보안경찰 탈북자 관리능력 제고 방안” 『공안연구』(경기 용인 : 공안문제연구소, 2001) : 전우택 외,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 분석”(서울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0) : 이하섭, “보안경찰의 탈북자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서울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광호, “탈북자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특히 보안경찰활동에 대한 법적 미비, 정부의 사회적응 지원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탈북자와 보안경찰의 관계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면서 보안경찰의 의식변화와 탈북자 지원체계의 명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여덟째,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장혜경, 김영란, 이기영, 박미석, 이종남 등을 들 수 있다.³⁹⁾

이들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남한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족의 안전성, 경제적 자립, 가족간의 갈등, 부부생활의 어려움 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체제가 상이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게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부적응,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인권 및 법적 지위, 심리적 안정과 신변보호, 청소년 문제와 선교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축적되어 있다. 특히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문헌연구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불안, 한국 국민들의 편견과 무관

39) 장혜경·김영란, “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전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2001) ; 이기영, “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 ; 박미석·이종남,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 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통일논총』 제17호(1999).

심, 사회의 안전망, 정부의 지원정책 개선방안 등에서 많은 성과가 달성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정부의 정착지원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은 여전히 부적응의 문제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부적응의 문제가 정부와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의 공동적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책임문제로만 한정시키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최하위계층으로 낙인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배제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향후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에 두어야 할 것이다.

① 정착지원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국력을 비교하여 볼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이 합리적이고 적합한지의 문제, 지원되고 있는 정착금이 사회정착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폭넓게 연구·검토하여 현실에 적합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⁴⁰⁾

②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사회 부적응의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③ 정착지원 후 사후대책 수립이 미비하다. 현재까지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40) 특히 정착지원금의 지급과 취업, 주거 등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갖게 한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성공적인 사회정책으로 이끌지 못하면서 오히려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정부의 효율적인 정착지원과 사후 대책이 수립되어 주기적 점검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현재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영세민으로 전락되고 현상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④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한국사회 부적응과 범죄의 증가, 재이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지원체계의 명확화와 업무과중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정부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단체가 연계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⑥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호칭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들에 대한 호칭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그 자체가 북한사회에서 ‘불량자’, ‘이탈자’, ‘배신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한국 정부가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한국 국민의 정서에도 합당하지 못하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이탈한 범죄자라고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한국에 수용하여 정착금을 지원하면서 정착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통일 후 북한 국민들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호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호칭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개별면담을 통한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현재적 시각을 재조명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실태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주거·생활실태 및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수집·검토하여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점을 규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국내외에서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행본과 「국회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석·박사학위논문, 「통일부」와 「외교부」, 「경찰청」등에서 발행한 정부 간행물,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북한인권정보센터」, 「한국고용정보원」을 비롯한 관련연구기관 연구자료, 북한이탈주민들의 각종 수기와 최근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개별 면접을 통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체계는 다음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선행 연구의 경향’,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기술하였다.

제2장 ‘탈북의 배경 및 경로’에서는 ‘사회이탈행위의 개념’과 ‘탈북의 주요 원인’, ‘탈북의 경로 및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에서는 ‘탈북자 현황’과 ‘정부의 지원체계’, ‘사회적응 실태 및 문제점’으로 나누어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였다.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 방안’에서는 ‘초기교육 강화’, ‘정착 지원방안 개선’, ‘심리적 불안정 해소’,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관리’로 나누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제2장 탈북의 배경 및 경로

제1절 사회이탈행위의 개념

1. 북한의 사회적 규범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표⁴¹⁾는 사회주의 건설과 한반도 공산화통일, 김부자 왕조세습체제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 건설과 당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계속 강화한다”⁴²⁾고 밝히고 있다.

사회정책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계급노선과 계급교양을 앞세워 김정일 1인 독재체제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정치권력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계급정책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에 입각한 혁명적, 과도기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제반사회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873면.

42) 「연합뉴스」, 『2001 북한자료·인명편』 (서울 : 연합뉴스, 2000), 401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① 전주민에 대한 성분조사사업과 계층구분사업, ② 당의 조직적 지도사업과 감시통제의 조직화, ③ 김일성 가계우상화 조작과 사상적 교화사업 등이다. 이를 통해 전사회적 동원 체계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모색하면서 모든 주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착취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북한이 실시한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1 > 주민성분조사사업

시기	사업	내용
1958.8~ 1960.12	중앙당 집중지도	○ 공개투쟁과 소조투쟁 전개 ○ 불순분자 색출처단, 산간벽지로 강제이주
1966.4~ 1967.3	주민재등록	○ 공안사찰기관원 등을 행정·생산단위에 과견 ○ 100만 명 적위대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 ○ 직계 3대 내사(본가, 처가, 외가 6촌까지)
1967.9~ 1970.9	51개층 분류	○ 주민재등록사업 성과를 토대로 주민을 51개층으로 구분
1972.2~ 1974	주민요해	○ 남북대화와 관련, 주민동태 파악 ○ 전주민을 ① 반신반의자, ② 변절자, ③ 믿을 수 있는 자로 구분
1980.1~ 1983	○ 공민증 대조사업 ○ 월북자 및 외국 귀하계층 구분사업	○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재교부 ○ 불순계층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강화 ○ 월북자 및 외국 귀화인들 13계층으로 분류 ○ 계층분류에 의한 감시 자료와 체계화로 감시 및 통제기능 강화

※ 출처 : 북한총람, 앞의 책, 878면.

북한의 계급정책은 해방초기와 사회주의 이행의 과도기, 한국전쟁시기, 사회주의 건설시기, 사회주의 공업화시기, 김일성 1인 체제시기, 세습체제 확립시기를 거치면서 일련의 변화를 보여 왔다.⁴³⁾

현재 북한의 사회는 1인 독재의 계급사회, 획일적 이념의 우상사회, 조직적 통제의 병영사회의 전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모든 주민들을 조직에 망라시키고⁴⁴⁾ 집단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2년 7.1 경제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가치관과 사회구조의 변화, 배급제 축소 등 집단주의적 사회보장 기능이 축소되었다.

2004년 4월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외부사조 유입·보안유출 차단 등 내부통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개성·해주·신의주·청진·강계·원산 등 접경도시를 중심으로 계급교양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면서 “전쟁영웅”을 이상형으로 내세우고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을 비롯한 집단주의적 사상교양과 계급투쟁의식을 한층 강화시켜 왔다.

43)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전주민을 3대 계급 51개 계층으로 분류하고 그에 상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44)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조선로동당」이며 약 400만 명의 당원과 30만개의 세포를 갖추고 있다. 사회단체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380만 명, 「조선직업총동맹」 160만 명, 「조선농업근로자동맹」 130만 명, 「조선민주여성동맹」 220만 명, 「조선소년단」 350만 명이 조직에 망라되어 있고 이들은 주 1회에 걸쳐 주생활총화를 통해 각자의 생활총화 및 동지적 비판을 의무화시키는 한편 월 2~3회에 걸쳐 조직의 위임분공을 수행한다. 「북한연구소」, 『북한실상 종합자료집』(서울: 북한문제연구소, 1995), 126면, 송경호, “김정일정권의 대남전략 및 추진양상”(경기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5 연구보고서), 35면 재인용.

2. 일탈의 사회적 논의

모든 인간사회에서 사회규범이 없다면 사회적 일탈행위도 없을 것이다.

“사회의 규범이 존재한다 함은 그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일탈행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탈행위란 인간 자신들의 지위에 부과된 규범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45)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범에는 법률·관습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전통·예의·유행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일탈행동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범죄·비행·마약·알코올 중독·매춘·싸움·행패 등의 유형뿐만 아니라 속어·은어 및 저속한 언어의 사용, 신성모독, 정치·경제에 관한 과격한 언동 등도 일탈행동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일탈행동 역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또는 사회체계의 차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 질 수 있다.” 46)

베커(H.S. Becker)는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서 통제 측의 제재가 없다면 처음부터 일탈현상은 없다고 보았다. 즉 일탈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규칙과 제재가 그 위반자에게 적용된 결과이고, 일탈자라고 하는 것은 낙인이 잘 어울리는 사람을 뜻하며, 일탈행위이란 것은 사람들이 일탈이라는 낙인을 붙인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47)

따라서 일탈은 공동체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45) Robert K. Merton & R. Nisbet (ed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p.824.

46)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서울 : 한국학술정보 주, 2007), 227~228면.

47) H.S. Becker, Outsiders :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New York : Free Press, 1963), p. 9.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북한의 사회적 이탈행위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 일성 사망, 자연재해 등으로 정치·경제·사회·대외적 어려움에 가중되고 특히 식량공급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이완과 이탈이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탈북의 주요 원인

탈북의 주요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정치 이념적 성향의 탈북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생존권적 차원의 탈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1995년을 기점으로 볼 때 이전시기에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염증을 갖고 자유민주주의사회인 한국을 동경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아 귀순한 정치 이념적 성향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였다.⁴⁸⁾

② 1995년 이후부터는 과거의 이념적 성향의 탈북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생존권적 차원의 탈북으로 변모하여 왔다. 「통일부」는 식량난에 의한 생활고를 탈북의 주된 동기로 파악하고 있다.⁴⁹⁾

최근에는 인권침해 및 범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①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사회주의 이념의 동요,⁵⁰⁾ ②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정권의 등장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사회혼란 가속화, ③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등 국제적 고립, ④ 1995년 자연재해⁵¹⁾ 및 경제난⁵²⁾ ⑥ 사회기강의 해이, 부

48) 1994년 「통일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과 한국사회 동경이 89.6%, 공공유용의 범죄는 2.4%로 나타났다.

49) 2000년부터 2004년 6월 현재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에 따르면 생활고에 따른 탈북동기가 55.6%인 반면 체제불만과 처벌우려는 17.7%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50) 1990년을 전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구하여 왔던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에 대한 현실적 설명이 상실되었다.

51) 1995년 8월의 대홍수는 200만 톤의 벼와 옥수수 생산의 감소를 가져왔고 100만 톤의 곡물이 유실되었다. 또한 1996년 수해, 1997년 한발 및 해일로 인해 농업분야의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52)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국제 분업체계를 무시한 자립적경제건설노선, 중공을 우선정책으로 경공업과 농업의 경시된 산업간 불균형 초래, 기존 사회주의국가들간의 경제협력 단절,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정책, 자연재해 및 기술과 자본의 한계, 노동

조리 확산, 외부정보의 유입 등으로 사회적 이탈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생존권적 위기에 봉착한 북한 주민들은 이념적 가치보다는 ‘돈이면 최고’ 라는 물질적 가치 선호의식이 팽배해져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식량을 구입하고, 돈을 벌기위해 중국으로 월경하였다.

그러나 체류 국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새로운 신분과 돈을 벌어 새 삶을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의 탈북 경향은 ‘경제적 어려움’, ‘인권탄압’, ‘체제불만’ 보다는 ‘꿈과 희망’ 이라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경향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1993년 이전까지(45년간) 총 641명(4.21%)으로 연평균 14.2명이 입국하였다. 2009년 1월 현재 탈북자는 15,271명으로 1994년부터 15년간 탈북자의 수는 무려 14,630명으로 전체의 96.25%를 차지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면서 가족을 동반한 탈북과 탈북의 동기 및 유형, 규모와 직업, 연령, 성별 등도 다양해졌으며 전문브로커와 알선단체를 통한 탈북이 급속히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력 저하 등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경제난은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의 3난, 국제경쟁력 및 노동력, 기술수준 저하의 3저, 생활안정 열악, 제품조약, 기계설비노후의 3악을 겪어 왔다. 더구나 식량의 어려움은 1980년대 5~600만 톤 생산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4~500만 톤 규모로 감소되었고 1994~1996년에는 식량생산량이 400만 톤 이하로 격감하여 식량난의 어려움은 절정에 달하였던 것이다.

제3절 탈북의 경로 및 유형

탈북자들은 197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대부분이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으로 그 경로가 확대되면서 다원화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탈북하고 있으며 그 경로는 두만강·압록강·백두산 유역으로 나타났다.⁵³⁾

① 두만강 유역을 가장 주된 탈북경로로 활용하고 있다. 이 지역을 탈북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두만강 북동쪽의 경우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아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잇점 때문이다. 하류지역도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물결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도강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강이 얼어 쉽게 도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백두산 유역을 탈북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역이므로 중국 공안요원들의 접근이 용이치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므로 탈북자들에게는 타 지역에 비해 은신처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적으로 장백현 지역을 중심으로 은신하여 야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 지역에 대한 경계근무를 한층 강화시켜 왔다.

③ 압록강 유역의 경우에는 두만강 유역과 백두산 유역에 비해 탈북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탈북이 어렵고 경비가 삼엄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 지역을 이용한 탈북은 주로 겨울철에 중·상류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53) 김문수, “탈북에서 입국까지” 『탈북자입국지원 법률개정 자료집』(2004.13면 참고).

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은 북한 지역에서의 1차적 탈출에 성공하면 우선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일대와 장춘, 심양, 대련 등 만주지역의 대도시, 흑룡강성의 목단강이나 하얼빈, 북경 등에 은신하여 생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탈북자가 증가하게 되자 북한은 국경경비를 전담하는 제10군단을 창설하여 국경경비를 한층 강화시켜 왔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탈북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단순 탈북자로서 식량 등을 구입한 후 북한으로 복귀하려는 유형의 탈북이 있다. 보통 15일에서 90일정도 중국으로 월경하여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복귀하고 있다.⁵⁴⁾ 이들의 최대 목적은 식량구입에 있기 때문에 식량을 구입하면 조속히 북한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현지에 정착하여 생활하려는 유형의 탈북이다.

중국의 친·인척 등 연고자를 중심으로 수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조선족의 도움을 받아 농사일과 벌목, 잡일 등을 하고 돈을 벌어 현지에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는 장기체류자로서 최종적으로는 한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하고 있는 유형의 탈북이다.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3~5년 동안 제3국에 장기체류하면서 북한체제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처벌 등을 우려하여 한국으로의 입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4) 식량구입을 목적으로 단신 탈출하여 국경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농촌마을 및 연길 등 인근 지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은신처를 마련하고, 식량 및 생필품 구입 후 북한으로 귀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과 몽골, 태국, 미얀마 등을 경유하여 한국으로의 입국이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체제의 불안정 등으로 탈북자들의 신분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여성 탈북자와 가족을 동반한 탈북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

제1절 탈북자 현황

1. 재외탈북자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은 제3국에서 은신생활을 하고 있고 관련국들이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통일부」는 1989년 9월 “북한이탈주민 대책의 현황 및 과제”에서 중국내 탈북자의 수를 3,000여명으로 추산하였다가 1999년에는 내부적으로 중국내 탈북자의 수를 30,000명 선으로 추정할 바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경우 탈북자를 3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탈북자 지원 NGO에서는 10~30만 명 규모로 추정하여 왔다.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외의 통계자료와 중국의 조선족 인구⁵⁵⁾ 중 동북 3성⁵⁶⁾의 총 인구 1,794,740명을 감안하여 추산해 본다면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는 대략적으로 약 3만 명 내외로 판단된다. 이들 중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만 5천여 명을 제외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는 약 15,000여명⁵⁷⁾ 선을 상회할 것으로

55) 1990년 현재 중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조선족 총인구는 2,097,90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북 3성이 97.1%를 차지하고 있다.

56) 29개 시·현의 총인구는 1,181만 명이며 이에 속한 마을은 2,479개로 나타났다. 한 마을의 가구 수는 20~100여 가구 정도이며 인구는 80~4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탈북자는 한 마을에 보통 4~10여명이 은신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7) 중국에 12,000명, 러시아 2,000명,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그 외 지역 1,000명(몽골, 태국

보여 진다.

재외탈북자들은 은신생활을 하고 있어 친인척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극 소수의 탈북자를 제외하고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 동북 3성의 농촌지역과 중·소도시의 소규모 사업장과 농촌 등을 전전하면서 불법체류⁵⁸⁾라는 약점 때문에 체포에 대한 공포와 인권유린, 감금, 폭행, 강제노동⁵⁹⁾, 성폭력, 인신매매⁶⁰⁾, 매춘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¹⁾

특히 중국 공안과 북한의 ‘체포 조’에 의해 대대적인 탈북자 체포 및 북한으로의 송환⁶²⁾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의 탈북자 체포는 중국인민해방군 산하 변방부대와 중국경찰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⁶³⁾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① 탈북자가 도강 후 국경마을에서 은신처를 찾기 위해 배회하다가 순찰중인 변방부대원에게 검거되는 경우, ② 은신생활을 하고 있는 마을에서 조선족 등의 밀고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 ③ 변방대원들의 호구 조사 시에 적발되어 체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⁶⁴⁾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대도시에서 중국경찰에

등)으로 추산된다.

58) 중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호구(공민증)나 거류민증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구입하는데 약 2~4만 위안이 필요하다.

59) 산간오지에서 양몰이와, 벌목장, 농촌지역에서 농사일과 집안일을 도와주고 임금대신 숙식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0) 탈북여성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한화 3~7만 5천원(중국 위안화 2~5천 위안)에 조선족 및 한족에게 팔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신매매 소개업소로부터 3천 위안에 매수하여 생활하다가 몇 달 후 다른 친구에게 5천 위안에 팔리고 또 다른 친구에게 1만 위안으로 매매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61) 1999년 「좋은벗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주민 노무자의 40.9%가 숙식제공 외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0~10,000위안(한화 45~150만원)에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2) 1998년 12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좋은벗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공안에 연행되어 강제 송환된 탈북자가 2,441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63)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탈북자 대책 및 정착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서울 :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 19~20면.

의해 체포된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호구조사에 적발되거나 조교(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 및 일부 주민들의 밀고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 파출소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은 후 구치소로 이관된다. 약 일주일간의 조사가 완료되면 변방부대로부터 가까운 국경세관으로 압송된다.

북·중 국경세관은 함경북도 회령을 비롯하여 양강도 혜산, 자강도 만포, 평안북도 신의주 등 10여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국경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보위부 반탐과⁶⁵⁾의 조사를 받은 후 인민보안성 구치소로 이송하게 된다.

구치소로 이송된 탈북자들은 알몸조사 후 감방에 수감되며, 한 감방에는 보통 9~15인의 탈북자가 수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과 어린이의 경우 보통 1주일, 남성은 1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단련대’로 이송된 남성 탈북자들의 경우 3~4개월간 강제노동을 받은 후 복귀하고 있다.

현재 탈북자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각은 국제난민법규상 탈북자를 공식난민(treaty-defined refugees)⁶⁶⁾으로 인정받아야 타당하지만, 국제법적 구속력과 해석권한을 가진 「유엔고동판무관실」(UNHCR)조차도 자율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⁶⁷⁾

64) 체포 후에는 변방부대 초소로 이송되어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1주일에 거쳐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조사와 탈북 목적, 경력, 가정환경, 도강 지점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수감을 채워 교두(국경지역의 북·중간 다리)로 이동시켜 북송절차를 밟고 있다.

65) 몸수색 후 귀중품 회수, 북한의 이력, 탈북목적, 탈북과정, 중국에서의 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기간 중에는 구타와 기함,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66) 국제난민 법규에는 공식난민을 정치적 이유로 인한 박해, 위협, 외교적·인종적 분류로 인한 내전과 전쟁 등의 사유로 인해 제3국으로 탈출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67) 유엔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주변 국가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⁶⁸⁾

① 중국의 경우는 1982년 「유엔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입국자 및 월경자에 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적용하여 왔다.

중국은 탈북자에 대해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단순한 “식량유민”임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처리방식은 「조 · 중 밀입국자 상호인도협정」(1960), 「국경관리협정」(1986), 형법 제8조 「국경관리방해죄」⁶⁹⁾, 「길림성 변경관리조례」 선전제강(1998) 등에 입각하여 밀입국자 ·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체포와 강제복송⁷⁰⁾의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② 러시아의 경우 1993년 「국제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를 체결 · 비준하였다.

모스크바에 UNHCR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나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처리방식은 북 · 러간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 측에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단속과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의 노동력은 약 4,3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 중 별목공이 3,700여명에 달한다.

러시아 지역의 탈북자들은 대부분이 별목장과 건설현장에서 탈출하여 중 · 러 국경지역을 전전하면서 청부업과 보따리장사 등으로 은신생활을

68) 최창동, “탈북자의 법적 지위”, (2002), 103~117면.

69) 1997년 10월부터는 새 형법에 “국경관리방해죄”를 추가하여 탈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경과의 거리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탈북자의 중국 체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70) 미국 난민위원회(USCR)은 2004년 세계 난민연구에서 중국 체류 탈북자가 매주 150명씩 강제송환 되었다고 밝혔다.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가급적 탈북자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한민국이 요청할 경우 「한·러 기본관계조약」(1992)과 「한·러정상 공동기자회견」(1994.6) 정신에 입각하여 비공식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③ UNHCR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에 유엔난민협약을 준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④ 미국의 경우 중·러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에 대해 미국에 친척이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우선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2. 국내 입국 탈북자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948년 남북한이 독자적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외의 정세변화 추이에 따라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53년 이전까지 북한이탈주민은 총 89명이 국내로 입국하였다. 1954년부터 1970년까지는 매해 7~52명으로 평균 24.5명으로 나타났다.

1971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해 1~16명으로 평균 10.3명의 저조한 입국을 보였으나,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매해 41~86명으로 평균 61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표 3-1> 언론이 공개한 대사관 및 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진입사건

시기	주요인사	장소	비고
2001. 6	장길수 가족 7명	북경, 유엔난민고등판문관실	
2002. 3	25명	북경, 스페인 대사관	7개국 10개 단체이상 개입
2004. 7	4명	북경, 독일학교	
2004. 7	468명	베트남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2004. 8	15명	북경, 한국 영사부	
2004. 9	29명	북경, 일본학교	
2004. 9	9명	상해, 미국학교	
2004. 9	44명	북경, 캐나다 대사관	
2004. 10	20명	북경, 한국 영사부	
2004	2명	미국 망명(실패)	재북탈북난민협회
총계	623명		

※ 출처 : 임종석,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의제일 뿐이다”
『2004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8』, 18면 참조.

<표 3-2> 연도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⁷¹⁾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1948~1950	25	1971	10	1990	9
1951~1953	64	1972	1	1991	9
1954	30	1973	1	1992	8
1955	52	1974	5	1993	8
1956	28	1975	4	1994	52
1957	35	1976	4	1995	41
1958	22	1977	3	1996	56
1959	19	1978	4	1997	86
1960	29	1979	5	1998	71
1961	14	1980	7	1999	148
1962	29	1981	2	2000	312
1963	10	1982	5	2001	583
1964	7	1983	8	2002	1,138
1965	12	1984	1	2003	1,281
1966	25	1985	1	2004	1,894
1967	21	1986	3	2005	1,383
1968	18	1987	15	2006	2,018
1969	45	1988	5	2007	2,544
1970	22	1989	16	2008	2,809
계	507		100		14,450
합 계	15,057				

71)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참조.

1999년에는 148명이 국내로 입국하여 한해 평균 100명 선을 넘어섰으며, 2000년 312명, 2001년에는 583명이 입국하게 되었다.

2002년 1,139명이 입국하여 최초로 1,000명 선을 돌파하였으며, 이후 2005년까지는 매해 평균 1,424명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여 왔다.

2006년에는 2,018명으로 한해 평균 2,000명을 넘어선 이후 2007년 2,544명, 2008년 2,809명으로 3년 연속 2천명 이상이 국내로 입국하면서 2009년 1월 현재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5,271명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유형은 과거의 단신 입국에서 최근에는 가족단위와 노년층, 청소년층, 여성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2007년 국내로 입국한 2,552명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성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북 당시 출신지역으로는 함경남·북도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직업은 노동자와 무직자가 83%, 탈북 동기는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한 탈북이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부터는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여 2009년 1월 현재 전체 입국자 15,271명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6.5% 10,108명으로 밝혀졌으며, 브로커에 의한 기획입국⁷²⁾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⁷³⁾

72) 2004년 탈북자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72%가 입국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브로커들은 중국 내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기획남행 단체에 알선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착수금을 받고 남한행 안내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으로 입국한 후에는 성공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로커 비용은 선교단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200~300만원, 기타 전문브로커를 통하는 경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기획입국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을 통장장이나,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종석, 앞의 자료, 6면.

73) 2004년 7월 베트남을 통해 468명이 기획 입국한 사건에 대해 북한은 2004년 7월 29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행위이자 백주의 테러범죄”

기획입국의 경우 2001년 6월 장길수 가족사건을 시작으로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2004년 10월까지 공개된 사례만 10여 차례에 걸쳐 600여명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의 2001년 1월 4일 경북경찰청이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문서 위조혐의로 브로커 조직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 조직은 11명의 탈북자에게 위조 여건을 발급하여 불법으로 입국시키고 1인당 1,000만원의 사례비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12월에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임영선 사무국장이 190명의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각각 20만원 씩 받아 “관광 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2008년 12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약 65%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 경기지역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35%는 전국에 분포되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입국유형은 30대가 33%로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가 28%, 10대 12%, 40대 14%, 기타 13%를 차지하고 있다.”⁷⁴⁾

또한 「북한인권센터」에서 『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의 취업률이 90.5%인 반면에 실업자는 9.5%로 조사되었다. 월 근로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66.7%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월 100만원 이상은 33.3%에 불과 하였다.”⁷⁵⁾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른바 “탈북자들을 대량 남조선으로 끌어간 행위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위반이고 도전이며, 우리 체제를 허물어보려는 최대의 적대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중단시키는 등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조성하였다.

7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참고.

75) 「북한인권센터」는 2008년 윤여상을 연구책임자로 하고 『2008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취업·실업·소득 중심)를 실시하였다. 2008년 기준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12,029명 중 광역지역 단위별, 성별, 연령대별 표본 추출된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취업자 중 93.7%가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66.6%가 100만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조사되었다. 윤여상, 『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참고.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비교적 조용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① 탈북자에 관해 지나치게 외교적 보호권 과 자국민 보호권을 주장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정책이 강화될 수 있고, ② 이는 은신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하며, ③ 한·중, 한·러 관계의 개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체류국 내에서의 체류 여건이 개선되기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업과 더불어 탈북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을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탈북자들이 국내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⁷⁶⁾을 표명하여 왔다.

76) 「동아일보」, 1999. 10. 17.

제2절 정부의 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남북관계와 국내외의 정세변화에 따라 일련의 변화를 보여 왔으며 이를 단계별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1961년 이전까지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군 보안기관에서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호처’(1962~1978년)가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을 1~5급으로 구분하여 250~500만원까지 정착지원금을 차등지급 하였다.

또한 이들을 국가유공자에 준해 대우하면서 취업알선과 양로 및 양호보호, 국공립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면서 주거문제를 지원해 주었다.

③ 1979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으로 개정(원호처 : 1979~1993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다.

이 시기 정부는 경제성장과 체제 안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을 1~5급으로 구분하여 800~5,000만원까지 정착금을 지원하였으며, 취업알선과 주택 무상제공, 교육, 의료보장 등 풍족한 혜택을 제공해 주었다.

④ 1993년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귀순북한동포호보법’으로 개정(1993~1997년)하여 그 담당업무를 「원호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였다.

‘월남귀순용사’에서 ‘귀순북한동포’로 전환하게 된 것은 냉전의 종식과 북한이탈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 배려보다는 독립적 생활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해 사회부조화 차원의 특별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하향 조정하고 생활보호와 주거지원, 취업알선, 교육, 의료 등 지원을 종전의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이들에 대한 정책이 일시적 보상에서 장기적 생활안정으로 전환시켰다.

⑤ 1997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정착지원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통일부 : 1997. 1. 13~현재)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통일원」내 인도지원국을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시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자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체제 적응을 용이하게 하면서 성공적인 정착으로 자립·자활을 유도한다는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 정착지원방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과 2006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개정하여 기존의 보호 중심의 정착지원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시키기 위해 전문자격 인정,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정착에 장애가 되는 이혼 특례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표 3-3> 북한이탈주민 처리과정과 소관부처

처리단계	업무	소관부처
초기입국단계	초기조사, 신변안전조치 등 보호신청 및 송환교섭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국가정보원(예외적인 경우)
	입국시기·방법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입국심사	법무부
시설보호단계	정착지원시설내 보호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학교교육,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등 담당
정착지원 및 사후지원단계	취업알선	노동부
	생활·의료보호	보건복지가족부
	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거주지보호	통일부, 행정안전부(경찰청), 지자체

※ 출처 : 이금순, “탈북여성의 사회적인 과제 및 대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제53차 회의자료, 2002.11.27. 123면.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지원체계는 1997년 7월부터 시행⁷⁷⁾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즉 초기 입국단계, 시설보호단계, 정착지원 및 사후지원단계로 나누어 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이 보조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1. 초기 입국단계

초기 입국단계는 탈북자가 국내외지역에서 한국에 보호신청 후 정부가 임시적인 보호결정을 내리는 단계를 말한다. 초기단계는 탈북자가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신청하면 한국의 재외 공관 등에서는 「통일부」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⁷⁷⁾

재외공관 등으로부터 탈북대상자의 보호통보를 받으면 「통일부」와 「국정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임시보호조치 및 사실관계의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결정을 내리게 된다.

2. 시설보호단계

시설보호단계는 「대성공사」와 「하나원」을 거치는 기본적인 단계를 말한다.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1999년 7월 「하나원」이 개원되기 이전까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착지원시설을 「대성공사」가 수행하

7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징은 사회적응 방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사회적응 교육·직업교육·취업알선이 명시되어 있으며, 북한 또는 재외에서 이수한 학력 인정,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78) 해외공관 또는 종교단체의 임시보호시설에 수용하고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 입국지원을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북한이탈주민이 급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자 「대성공사」의 시설로는 수용시설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더구나 민간인 신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을 군 보안시설에서 수용·관리하는 문제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담부서를 「통일부」에서 총괄 지원하는 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대성공사」⁷⁹⁾의 심문 조사기간을 최소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분과 탈북동기, 위장탈북여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확인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표 3-4> 정부의 정착지원시설(하나원) 현황

시설명	연건평	시설 내역
부지	18,147평	500명 수용부지 확보
건물	2,214평	
교육행정동	1,242평	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자치활동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자료실 등
후생동		주방, 식당, 목욕탕, 휴게실, 의무실 등
숙서동	701평	1인실, 2인실, 4인실, 별실, 특실, 가족실 등(51개실, 105명 수용가능)
경비숙소동	241평	숙소, 내부반·정비실
경비·면회실	30평	경비실, 면회실

※ 출처 :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99-02(서울 : 통일연구원, 1999), 66면.

79) ‘대성공사’에서는 탈북자의 입국 후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경찰청 등의 합심조가 운영되며 탈북동기와 입국경위, 위장입국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보통 1주일에서 한달정도 소요되며 조사종료 이후 「하나원」으로 신병이 이관된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총체적 보호관리 업무는 「통일부」에서 주도하고, 부처별 업무범위가 정해져 정착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신변보호 담당관(보안경찰관), 거주지 보호담당관(자치단체), 취업보호담당관(노동부)이 배정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⁸⁰⁾의 결정에 따른다.

「하나원」에서는 3개월에 걸쳐(2009년 3월 이전 8주에서 12주로 환원)생활지도, 사회적응 교육, 기초직업훈련, 사회편입 및 생활안정지원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⁸¹⁾

기본적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9.6%), 정서함양(5.0%), 한국사회의 이해(7.3%), 사회적응능력 배양(10.8%), 정착의지 함양(3.85%), 기초소양교육(13.5%), 현장학습(16.1%), 진로 및 직업지도(6.5%), 기초직업훈련(11.5%), 일상생활 기능실습(8.8%), 기타(6.9%)로 짜여져 있다.⁸²⁾

① ‘한국사회의 이해’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사회의 경제·사회·문화·교육·역사·종교·법과 시민생활 등 한국사회전반의 이해를 목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정치·경제, 시장경제와 경쟁원리, 법과 시민생활, 사회·문화, 한국의 전통사상, 한국교육의 이해,

80)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해 경찰청, 국정원,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등 10개 부처의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2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81) 「하나원」의 교육 목표는 탈북자들을 한국사회에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초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있다.

82)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탈북자 대책 및 정착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서울 :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 68면.

한국역사의 이해, 한국종교의 이해 등을 교육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② ‘사회적응 능력배양’의 교육 주제에서는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어적응, 신문방송의 이해, 대인관계,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역생활 및 지리학습, 생활경제, 생활법률, 생활예절, 교육 및 학교생활, 여가활동, 생활의학, 생활안전, 여성의 지위, 이성과 결혼 등을 교육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③ ‘기초소양교육’의 교육 주제에서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용한자, 기초한자, 신문활용교육 등을 교육 과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④ ‘심리안정’의 교육 주제에서는 심리적 안정 증진, 인성검사 및 심리적 적응, 인성수련교육 등을 교육과목으로 설정되었다.

⑤ ‘정착의지 함양’의 교육 주제에서는 정신교육, 정착경험을 ‘정서함양’의 교육 주제에서는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봉사활동을, ‘일상생활기능실습’의 교육 주제에서는 자동차 운전, 전산교육, 전기·전자기초실습 등을 교육 과목으로 설정하였다.

⑥ ‘진로 및 직업지도’의 교육 주제에서는 적성과 진로, 진로탐색, 진로상담, 탈북주민 지원정책,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현장학습’의 교육 주제에서는 현장견학, 체험교육을 교육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⑦ ‘기타’의 교육 주제에서는 전담관과 대화, 개인위생, 사전안내 교육, 퇴소 후 생활안내 등을 교육 과목으로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운전 및 기초직업훈련, 현장학습, 성공적 사회적응 사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이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영어 및 한자교육, 한국지리와 역사 등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설보호 단계에서는 국적 취득이 이루어지며 취직, 주민등록증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의료 및 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학력 및 자격인정을 위한 기초 자료 등을 제공한다.

「하나원」은 2005년 4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생활에 기본이 되는 100문항을 선정하여 『새 삶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네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생활이야기’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통신의 내용 및 활용방법, 은행, 도량형, 세금과 공과금, 주택마련, 시장과 가격, 이용과 미용, 외국출입, 행정기관의 기능, 퇴소 후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을 담고 있다.

제2장 ‘직장 및 진학이야기’에서는 직업훈련, 직업세계 및 취직, 자격증, 직장생활 및 임금, 진학 및 교육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제3장 ‘법률이야기’에서는 법 규칙,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취적, 혼인, 정착지원금, 주택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장 ‘의료이야기’에서는 의료지원 혜택 및 주의사항,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보험금, 건강진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관리 지침은 지원에서 적응교육으로 변화시켜 왔다. 한국사회의 첫 관문으로 볼 수 있는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으로 교육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기초적인 소양교육을 마치면 「하나원」을 퇴소하여 각 지역별로 분산 배치된다.

3. 정착지원 및 사후지원 단계

가. 정착지원제도

1) 정착금

정착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배출 후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하나원」 교육수료 후 기초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정착지원금(정착지원금, 정착장려금, 정착가산금)을 자립·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하여 왔다.

정착금의 지급⁸³⁾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기 10일 이전에 정착금의 5분의 1을 지급하며, 그 잔액은 퇴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된다.

분할 지급금은 매분기별로 나누어 1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정착장려금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국내 입국자에 한해 지원해 주고 있다. 정착가산금은 사회진출 이후 4년 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재정지원에서 탈북자의 정착의지를 제고시키고 개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탄력성 있게 적용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99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자활의지를 제고하고 취업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8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표 3-5> 시기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내용⁸⁴⁾

시기	1953~ 1962. 4.15	1964. 4.16~ 1978.12.31	1979.1.1~ 1993.12.10	1993.12.11~ 1996.7.13	1996.7.14~현재
관련법	없음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보 호법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군 및 정보기관	원호처 (국방부)	원호처→국가 보훈처 (국방부)	보건사회부	통일원→통일부
정착금	규정없음 (1962년 제정법률 은 1962년 이전 귀순자는 정착금 대상에서 제외함)	정착수당 지급 (1977년 기준) 1급 : 500만원 2급 : 350만원 3급 : 150만원 4급 : 100만원	지급기준 : 신분 및 정보가치 지급액 : 황금 1.90~14.500g (1,900~1억 4,500만원)	지급기준 : 가족수(기본금) 정착여건(가산 금)지급액 월 최저 임금의 20~100배 (690~3,450만 원) 대부분 1인가족 690만원	지급기준 : 가족수(기본금 : 160배 이내) 연령 · 건강상태 · 근로능력(가산금 : 40배 이내) 지급액 : 좌동(대부분 1인가족 4,000여만원 수준) ※ 기본금 : 월 최저임금기준
보로금	규정없음	없음	지급기준 : 휴대장비가치 지급액 : 금 10~14,500g	지급기준 : 정보가치 +휴대장비가치 지급액 : 금 10~20,000g	지급기준 : 좌동 지급액 : 최고 2억 5,000만원

8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및 정착지원제도” (08.5)참조.

① 정착금의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현금지원을 축소시키는 반면 주택지원의 현실화와 취업장려금을 증액시켰다.⁸⁵⁾

② 생계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정부는 근로능력세대와 근로무능력세대로 구분하여 생계급여 조건부 면제기간을 1년→6월, 특례기간을 5년→3년으로 근로능력세대의 특례기간을 축소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정착을 잘 하는 탈북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 3-6> 정착지원금⁸⁶⁾

가족수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
1인	300	300	1,300	1,900
2인	400	700	1,700	2,800
3인	500	1,000	1,700	3,200
4인	600	1,300	1,700	3,600
5인	700	1,600	2,000	4,300
6인	800	1,900	2,000	4,700
7인 이상	900	2,200	2,000	5,100

85) 현금지원은 1인기준 1,000만원→600만원으로, 주택지원은 1인세대 기준 1,000만원→1,300만원으로, 장기취업장려금은 최대 900만원→1,5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정착금의 압류·양도 금지 및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86) 「통일부」, 위의 자료 2면.

③ 「통일부」와 「노동부」가 공동운영하는 「새터민 자립지원종합센터」를 설립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제도를 통한 One-Stop Job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표 3-7> 정착장려금⁸⁷⁾

구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5개월 이하		미지급
	6~12개월	개월 X 20만원	
	1년과정, 폴리텍대학, 우선선전 직종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수혜자	200	
취업장려금	1년차	450	
	2년차	500	
	3년차	550	
총액(최고액)	2,140만원		

④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근속자와 노령·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2년→3년으로 확대시키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사업장 지불임금의 1/2을 2년간 지원하는 채용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87) 「통일부」, 위의 자료 3면.

물품을 정부가 우선구매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⑤ 전문분야 자격인정 제도를 개선하여 보수교육과 자격인정심의 위원회를 도입, 전문분야의 자격인정제도를 개선하였다.

<표 3-8> 정착가산금⁸⁸⁾

구분	지급기준	지급수준(만원)
연령 가산금	60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 등급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 X 80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	편부모 아동	360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정착금 지원은 북한에서의 신분과 정보가치, 시기별 관련법규에 따라 차등을 두어왔으며, 현재는 과거의 물질적 보상위주의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 중심의 지원방향으로 전환하였다.

2) 주택지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주택지원은 이들이 사회편입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각 ‘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영구·공공

88) 「통일부」, 위의 자료 3면.

임대)를 우선적으로 알선하여 지원하고 있다.

1998년 10월부터는 기존의 주거지원 기준 11~17평에서 13~25평으로 주거지원 기준을 현실화하였다.

지원방법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단독세대의 경우 1,300만원, 2~4인세대의 경우 1,700만원, 5인 이상 세대의 경우 2,000만원을 주거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배정지역은 탈북자들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선 희망지역으로 배정해 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3) 취업지원

정부의 취업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해 준다는 원칙에서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취업과 관련된 법률적 기반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력인정, 제14조 자격인정, 제17조 취업보호, 제18조 특별임용, 시행령 제34조 고용촉진 지원, 시행령 제35조 취업알선 등이 있다.

“취업보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받으며, 취업보호 연장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에 대해서는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1/2을 2년간 지원해 주는 ‘고용지원금제’를 도입하였다.

취업 후 1년까지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1년 이후부터는 70만원 범위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장기근속자와 노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

다.

또한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영농교육훈련과 농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동부」 산하 각 지방에 「고용안정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로지도, 직업훈련기관 알선, 취업대상 사업장을 연결해주는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현재 전국의 53개소 ‘고용안정센터’에는 53명의 취업보호담당관이 배치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무상실시,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북한이탈주민 독자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임용”은 북한에서 공무원 또는 군인이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국에서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특별임용 하는 제도이다.

“고용촉진지원”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 등을 장부에 정리·비치하여 민간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알선”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면 「통일부」는 이를 「노동부」에 송부하고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업훈련의 법적보장에 따라 정착지원시설 및 각부처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5개 직종⁸⁹⁾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기간 중에는

89) 북한이탈주민이 선호하는 직업훈련은 정보처리, 조리, 운전, 자동차 정비, 미용, 운전(대형), 특수 용접, 중장비, 제과제빵, 패션디자인, 사진기능사, 이용, 정기가전, 무역영어, 전기일

직업훈련수당을 15~51만원을 지급(훈련비 전액과 가계보조수당 · 가족수당 · 교통비 · 식비 등)해 주고 있다.

4)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은 이들이 재북 당시 학력을 인정하고 편입학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⁹⁰⁾

편입학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는 만 25세 이하 학비를 전액 면제시키고 있으며, 대학에 편입학을 할 경우 만 35세까지 국립대학 학비 전액 면제, 사립대학은 국가와 학교가 각각 1/2을 부담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2005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지원이 실질적인 취업 및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대학진학을 거주지보호기간(5년)과 만 35세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탈북청소년특성화학교(한겨레학교⁹¹⁾)를 설립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정규학교 부적응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 왔다.

5) 사회보장지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최저생

반, 전산정보, 보일러기능사, 간호조무사, 공인중개사, 도배, 방송작가, 버섯재배, 보석감정사, 실내건축, 전자기기, S/W 엔지니어, 인장공예, 전기배선, 선반기능사, 건축설비자동화, 웹디자인, 전산응용, 정보검색사, 웹마스터, 무역실무로 나타났다.

90) 편입학은 거주지 관할 교육청 학력심의회를 거쳐 학력 인정과 거주지 인근 학교에 편입학하고 있다.

91) 한겨레중·고등학교는 120명의 정원에 중·고등학교 통합형이며 2006년 3월 임시 개교하였고, 2007년 9월 건축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음.

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수급자 대상기간은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3년, 근로능력이 없는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5년간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배출 6개월까지는 조건 없이 급여를 실시하지만 6개월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현금급여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 2008년 현금급여 지급 최고액⁹²⁾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1인 세대	387,611원	4인 세대	1,059,626원
2인 세대	656,544원	5인 세대	1,245,484원
3인 세대	859,357원	6인 세대	1,433,250원

둘째는 의료급여이다. 정부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탈북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정하여 진찰, 치료(특수진료 제외) 등 의료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나. 거주지보호 및 사후지원제도

거주지 보호 및 사후지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92) 「통일부」, 위의 자료 6면.

첫째는 ‘보호담당관제’를 통한 지원이다.

보호담당관제는 거주지, 취업, 신변담당관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① 거주지보호담당관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 및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11명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있고 이들은 의료·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지원과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사업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주지보호는 5년으로 각종 애로사항 해소 및 수시 또는 반기별 정착 실태를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취업보호담당관제는 「노동부」 산하 전국 53개소에 「고용안정센터」를 설치하여 53명의 전문 취업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③ 신변보호담당관제는 전국의 경찰서에 약 700여명의 보안경찰관이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신변위해 관련 상담역할과 보호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보호의 종류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신변보호 종료자로 나누어 진행된다.⁹³⁾,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진입이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거주지에서 신변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93) 가급 : 재북시 고위급 또는 공작원 출신자, 나급 : 재북시 중요직책 종사자 또는 정착생활 불안정 관찰·계도 필요자, 다급 : 일반탈북자대상 사회배출후 6개월간 보호, 신변보호 종료자 : 가·나·다급 보호 종료자로 나누어진다. 보호기간은 가·나급이 5년(필요시 연장가능), 다급은 6개월이며 원칙적으로 가·나·다급은 해외여행이 불허되며, 보호 종료 후에는 중요 동향만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무는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협 관련 정보수집 및 위해로부터 보호해주고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 할 수 있는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호대상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는 정착도우미제도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세대 당 2명의 민간자원봉사자를 정착도우미로 지정하여 왔다. 이들은 「하나원」 수료 후 약 1년 동안 지역사회 안내와 각종 고충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정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착도우미제도는 2005년 시범실시 하였고, 2006년 1월 시행 이후 2008년 4월 현재 1,86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한 지원이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1997년 8월 18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설립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지원사업과 상담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본 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착지원을 통해 이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4개의 분과위원회(사회적응, 취업, 결연·해외, 홍보·기금)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교, 사회, 경제 및 언론계 등 각계 지도급 인사 39명의 이사로 구성되었다.

주요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취업알선, 해외체류 탈북자 지원, 홍보 및 기금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후원회의 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기부금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통한 지원이다.

<표 3-10>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⁹⁴⁾

단체명	주요 활동 현황
가양7복지관	자립지원 프로그램
고향마을	시범농장 운영, 영농정착지원
남북나눔운동	해외 체류자 지원
두레마을	해외 체류자 지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법 제30조의 사업
북한인권시민연합	청소년 학습지도, 하나원 자원봉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이북5도지부	자매결연, 자선음악회, 장학지원
선한사람들	자매결연, 생활보조금 지원 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해외 체류자 지원
이북5도민중앙연합회	후원회이사, 장학지원
이주난민선교회	자매결연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불우자 지원
좋은벗들	해외 체류자지원, 심성수련프로그램
중앙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	미정
천주교 민족화해운동본부	동아리 지도, 청소년 프로그램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바자회, 마라톤대회등 종합프로그램
통일민족건국회	영농정착지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외 체류자 지원, 자매결연사업
한국인성개발연구원	심성수련프로그램, 하나원 교육
한국자유총연맹	위로 행사, 마라톤대회, 바자회
한국 YWCA	직업훈련, 상담실 운영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명절위로행사
하나로복지연구원	상담지원, 컴퓨터 교육
희년상담소	해외 체류자 지원, 상담지원
행주치마운동본부	자원봉사
밥퍼	해외 탈북자 지원

94)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대안보고서』(김성호의 원실, 2001.9), 10면.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밀집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6개 지역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역협의회는 지역내 보호담당관, 지역사회복지관, 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취업알선, 장학지원,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종 애로·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11월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를 발족하여 민간 차원의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프로그램은 물질적 지원⁹⁵⁾과 비물질적 지원⁹⁶⁾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95) 공동거주지 제공, 생활용품, 의료,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96) 경제적 적응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영농기술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원은 교회 결연 사업, 대학과 민간단체내의 상설적인 모임 등을 통해 신앙권고, 상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방문, 북한이탈주민과 한국국민의 대화 및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임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제3절 사회적응 실태 및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은 정부의 지속적인 정착지원 개선노력과 사회단체 및 후원회 지원 사업 본격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사회 적응실태와 문제점을 사회·심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정착지원적 측면, 보안경찰의 신변보호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회·심리적 적응실태와 문제점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즉, 북한 출신의 한국 국민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으로부터 지니고 있는 문제이다. 이들은 북한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이 입국 후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현실과 기대감에서 엄청난 괴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대해서는 쉽게 친숙해지는 경향을 갖고 있는 반면 주변인들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경향이 강하게 표출되어 줌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첫째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죄책감과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탈북으로 인해 부모 형제가 겪고 있을 고통에 대해서 매우 가슴아파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한 채 가족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한국에서 성공하는 길만이 부모 형제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통일이 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자신들의 신분 공개가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고 있으며, 간첩들의 테러에 의한 신변의 위협의 고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는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서의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획일화된 북한 사회에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주어진 여건에 충실 한다면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출발은 모든 것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이로부터 오는 공포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 설정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착 초기에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착지원금의 도움으로 일정기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서부터는 정착지원금도 줄어들고 취업과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과 주거문제를 「하나원」 퇴소 이후 동시에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정착에 요긴하게 쓰여 져야 할 생명과 같은 정착지원금을 생활비와 임대비로 소모해 버리는 낭비적 요소가 지속되어 왔다.

취업 이후에는 대인관계와 언어소통, 경쟁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보통 2~3년 안에 자진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직업이 없고 수입 문제의 어려움 등으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한국 사회 및 국민의 편견과 무관심이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범죄시하면서 사회적 격리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들을 부정적 태도로 바라볼 뿐 개성과 개별성을 갖춘 개인의 인격체로 인식하려 하지 않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국민들과 동등하게 보지 않고 동정심과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늘 긴장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 국민들과의 만남과 대화조차도 두려워하는 등 자신들끼리만 어울리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밀집되어 생활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죄를 짓고 온 범죄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자녀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있다.

특히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적응 노력과 실패, 실망 등이 스스로 자신들을 위축시키고 갈등과 충돌의 후유증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과 제3국, 한국을 비교하는 심리적 갈등으로 표출 되었으며, 사회적 지위 하락과 극도의 불안감, 분노가 폭발하면서 실업문제와 살인, 강도, 강간, 사기, 폭력, 법률위반 등 각종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리적 불안정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으로의 입국 한 후 5~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점차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⁷⁾

넷째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정 문제이다.

가정생활부문에서는 세대간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권위를 잃는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부부간의 문제는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의 적응 속도와 형편이 높을수록 부부의 갈등이 심하게 표출되었고, 일부의 경우에는 가장의 권위가 훼손되었다는 인식으로부터 남편의 폭력을 유발시키고 결국은 가정불화와 이혼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교육과 언어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생활에 적응능력이 부족하여 학업성적은 중·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으로 입국하여 자신들이 한국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불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남한에 들어오기 전 외국에서 생활하였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⁷⁾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자들은 해외에서 은신생활을 하면서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 공포심을 겪어 왔으며 국내로 입국한 후 점차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상당기간 자신들이 생활전반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감과 한국 국민들의 무관심,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경쟁력 부족 등이 팽배하게 작용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겪고 있다.

97) 첫째단계는 공포와 불안감이 극심한 이질문화 충격단계, 제2단계는 한국에 대한 동조와 불만이 뒤섞인 기초취업 준비단계, 제3단계는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된 생활정착단계, 제4단계는 한국사회에 순응·동화하는 재사회화단계, 제5단계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는 문화사회적 통합단계이다.

98) 이영선·정우택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서울 : 오름, 1996), 30면.

특히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착지원금과 고용지원금, 기초생활보장지원금 등을 일하지 않고 수혜하려는 경향과 특별대우를 바라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일부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유흥업소로 빠져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 문제는 통일 후 사회통합의 실험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사후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제적 적응실태와 문제점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최하위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주민생활의 풍요로움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자신들의 커다란 꿈과 희망을 갖고 있지만 「하나원」 퇴소 이후 겪는 있는 문제의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인 것이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자유롭고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회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정하고 이기주의적인 사회라는 인식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의 생활보다는 윤택한 물질적 풍요로움을 느끼면서도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 있다. 또한 전반적인 근로소득의 열악함을 느끼면서 생활의 어려움은 자신감의 결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첫째, 기초자산이 적은 탓이며, 둘째는 계속적인 소득을 공급받아야 할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소득이 너무 낮은데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⁹⁹⁾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가 알선해주는 직장에 한번의 취업기회를 부여 받고 있으며, 주거생활은 15평을 전후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적응실태와 문제점을 취업·주거·소득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적응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증거는 상당수가 무직, 임시직, 영세 자영업으로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으로는 임대아파트에서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이며, 전세를 비롯한 자가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렵게 취업을 하였지만 직장생활의 적응력 부족으로 보통 1~3년 안에 퇴사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3-11> 취업자의 근속기간¹⁰⁰⁾

구분	빈도	비율
6개월 미만	68	46.6
6개월~1년 미만	31	21.2
1~2년 미만	18	12.3
2~3년 미만	14	9.6
3년 이상	15	10.3
합계	146	100.0

99) 윤덕룡·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 173면.

100) 윤여상, 앞의 책, 56면.

따라서 이들은 막노동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내로 입국하는데 사용된 브로커비용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 준 정착금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한편 일부는 투자 손해 및 사기로 인해 정착금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였다.

<표 3-12> 입국시기별 취업자의 근속기간¹⁰¹⁾

구분	6개월 미만	6~1년	1~2년	2~3년	3년 이상	합계
2005년	25	9	9	10	13	66
이전 입국	37.9%	13.6%	13.6%	15.2%	19.7%	100.0%
2005~6년	19	8	8	4	2	41
입국	46.3%	19.5%	19.5%	9.8%	4.9%	100.0%
2007년	24	14	1	0	0	39
이후 입국	61.5%	35.9%	2.6%	0.0%	0.0%	100.0%
합계	68	31	18	14	15	146
	46.6%	21.2%	12.3%	9.6%	10.3%	100.0%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을 하고 싶어도 경쟁력이 떨어져 취업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으며, 어렵게 취업을 하여도 기대하였던 만큼의 보수를 받을

101) 윤여상, 위의 책, 57면.

수 없는 것이 커다란 실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13> 북한이탈주민 노동가능인구 수(2008년도 기준)

시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강원	7	5	13	38	23	80	16	45	2	10	10	15	71	193	264
경기	92	97	224	476	223	923	164	400	36	81	42	123	781	2,100	2,881
경남	9	16	18	55	30	124	29	76	6	9	4	16	96	296	392
경북	6	17	29	43	24	112	40	50	4	12	7	13	110	247	357
광주	6	10	23	55	22	79	24	40	9	12	3	8	87	204	291
대구	8	8	43	56	30	105	24	48	7	11	3	17	115	245	360
대전	12	13	19	52	17	90	29	60	4	19	7	24	88	258	346
부산	13	14	55	65	49	157	52	75	22	18	12	30	203	359	562
서울	152	168	374	633	319	913	312	545	114	170	95	208	1,366	2,637	4,003
울산	4	5	8	14	15	40	20	22	6	7	5	9	58	97	155
인천	20	40	79	178	72	389	70	172	20	28	29	52	290	859	1,149
전남	9	6	16	50	18	70	26	52	9	4	3	8	81	190	271
전북	4	2	8	43	8	62	13	37	6	2	4	6	43	152	195
제주	1	3	7	8	7	16	4	14	3	3	3	3	25	47	72
충남	12	12	24	50	29	120	30	69	13	12	6	16	114	279	393
충북	13	8	18	39	21	121	21	56	6	15	2	18	81	257	338
합계	368	424	958	1,855	907	3,401	874	1,761	267	413	235	566	3,609	8,420	12,029

※ 출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또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대기업과 은행, 공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급속한 증가를 보였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중소기업 중심의 3D업종에 취업이 편중되어 왔다.

또한 취업 후 재직기간은 평균 5.8년으로 이직률이 매우 높다.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재북 당시 직업이 노동자 농민의 직업과 무직으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직장인들과 경쟁의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¹⁰²⁾

따라서 대부분이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주로 전문직이 아닌 노무직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② 주거생활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15평을 전후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간 또는 영원히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영세민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102) 통일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재북당시 직업이 2008년 11월 현재 14,719명 중 무직 46%,(6,776명), 노동자 41%(6,030명), 관리직 2%(347명), 전문직 2%(327명), 예술·체육인 1%(147명), 봉사분야 4%(563명), 군인·공직원 4%(529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상류층 이상이 11.1%에 불과하고 중하류층 이하는 52.5%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에서의 생활수준이 열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6%는 하류층, 7.8%는 극빈층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탈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 75면.

<표 3-14> 주거형태

주거형태	비율(명)
개인소유 주택	0.3%(3)
개인소유 아파트	0.8%(9)
기타	0.8%(10)
공동주거	2.0%(24)
전세 또는 월세주택	2.2%(26)
임대 아파트	94.0%(1,119)
계	100.0%(1,191)

③ 북한이탈주민의 세대 당 월수입이 100만정도로 매우 열악한 생활수준에 놓여 있다.

2004년 선한승의 조사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월수입이 73.1%로 나타났다으며, 2005년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9.6%를 차지하였다. 「하나원」의 2004년 통계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 중 최저생계비 생활자가 78%, 무직자의 비율은 40.8%, 범법행위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⁰³⁾

또한 「통일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취업자 중 62%가 노동직(비정규직 포함)으로 이들 중 수입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3%에 불과한 반면 수입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7%를 차지하였다.

103) 최저생계비 미만 생활자가 78%(소득 70만원 이하 58.6%, 무수입 14.5%), 범법행위자는 2000년 39명에서 2001년 54명, 2002년 89명, 2003년 90명, 2004년 6월 현재 93명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들 중 직장이 없는 경우 1년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특례를 적용시켜 왔다. 2년차부터는 근로능력의 여부에 따라 수급대상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서 수급 혜택을 주고 있다.¹⁰⁴⁾

2004년 9월 15일 「세계일보」의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 중 이민을 희망하는 탈북자가 68%(반드시 간다 16%, 가능하면 간다 53%), 합법적으로 북으로 갈 수 있으면 가겠다는 의견도 3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2005년 『새터민 정착지원 상황 종합실태조사』¹⁰⁵⁾에 따르면 가족전체의 월수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3-15> 가족 전체의 월수입

소득 수준	유효비율(명)
35만원 미만	13.8%(134)
35~60만원 미만	28.0%(272)
60~90만원 미만	20.4%(198)
90~100만원 미만	14.1%(137)
100~150만원 미만	14.2%(138)
150~200만원 미만	5.7%(55)
200만원 이상	3.7%(36)
계	100.0%(970)

104) 2005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탈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80.2%로 나타났다.

105) 2005년 새터민 정착지원 종합실태조사에는 1,210명이 참여하여 970명이 응답하였고 240명이 무응답 하였다.

최근 윤여상의 조사한 『2008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는 취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93만 7천원,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106만 3천원으로 밝혀졌다.

소득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전체의 60.2%가 불만족(약간 불만족 31.55, 매우 불만족 28.7%)을 보인 반면에 만족은 39.7%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51.7%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부채는 약 21%로 그 규모가 100~1,000만원의 소규모 채무가 46.6%를 차지하였다.

<표 3-16>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도

구분	항목별 만족 혹은 불만족 요인					
	현재 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어느 정도 만족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17.3		50.8	25.4	6.1		
적응 시 어려운 점	돈벌이	차별	문화적 이질감	타인과 경쟁 분위기	언어	인간 관계
	40.3	47.5	25.1	12.2	40.3	16.6
남한사람 들의 차별여부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0		31.3	15.3		

※ 출처 : 오효림, 『월간중앙』 (2006. 8), 132면.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생계비 수급자는 60.2%, 직업

훈련장려금 수혜자 22.1%,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35.7%, 고용지원센터 구직등록 경험의 경우에는 68%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열심히 일하여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특별한 기술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며 업무능력이 떨어져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대인관계와 조직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최저생계비 생활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복지제도가 미흡하여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최하위계층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3. 정착지원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정착지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남북관계와 국내외정세의 변화 등에 편승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서냉전시기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을 추구하였던 시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들에 대해 특별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그렇지만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던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이들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을 대폭적으로 하향조정 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현재의 지원정책은 기존의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은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둘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차등지급하여 왔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던 고위관료 및 그 자녀들이 한국으로 입국하여서도 여전히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데 불만을 제기한다.

정착지원금의 차등지급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 당시 학력과 신분정도에 따라 고위직의 경의 많은 정착금을 지원해 주었다. 반면에 저학력 계층의 신분정도가 중·하위계층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보의 가치가 적다는 판단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정착금을 지원하여 왔다.

셋째는 시설보호단계에서 정부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원」의 교육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질적 교육보다는 양적·형식적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는데 아쉬움을 갖게 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완전히 습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과 인력부족, 교육내용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회적응 교육훈련에 있어서 현장수업보다 이론적 강의에 치우치고 있다. 또한 교육대상자들의 신분과 성격, 취향에 맞는 교육내용이 특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② 사회적응교육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이 기간에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이수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③ 매해 2,000명 이상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예산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특히 예산 부족의 애로를 느끼면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교육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제때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현재의 정착지원금이 한국의 국제경쟁력과 국민총생산에 비교하여 볼 때 적합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분석 검토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필요한 정착금이 책정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원」 퇴소 이후 취업과 주거지원이 동시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이 낭비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여섯째는 한국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름길이 안정된 직장에서 생활하는 데 있지만, 이들의 능력과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직장을 알선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인들도 경쟁력이 부족한 이들을 채용하여 포용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일곱째는 정부가 15평 규모의 영구 임대아파트를 주거의 생활터전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들이 개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장기간 또는 평생 동안 영세민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덟째는 교육지원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학 진학을 편입학의 경우 만 35세 또는 거주지보호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토대가 빈약하며, 이들에게 대학진학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배움의 기회를 배제시키는 것과 다름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홉째는 경쟁력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직장에서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대상을 제한시키고 있다는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4. 보안경찰의 신변보호 실태와 문제점

정부는 1999년에 거주지보호 전담제를 도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거주지보호전담관을 통해 거주지 편입 및 각종 사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 거주지보호전담관, 취업보호전담관, 신변보호전담관제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과 “국정원법” , “경찰청지침” 에 따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보호)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는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하여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고 밝히고 있다.

“국정원법” 제3조 1항 5호(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신변보호지침」 을 마련하여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다.

“경찰청지침”에는 “보호대상자를 관계기관(정착지원시설, 국정원, 정보사)으로부터 신병을 인수받아 경찰기관의 보호를 받은자(동 지침 제 3조)”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7조에는 “신병기관장은 신병인수 3일전까지 주거지원 여부와 인적 사항 및 본인 일치여부, 대상자의 질병 여부 등 건강상태, 소지품, 기타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신병을 인수, 인수·인계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신변보호는 특별보호와 일반보호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특별보호의 경우 가, 나, 다급(동 지침 제10조 1항)으로 구분되며, 가급의 경우 4명, 나급 2명, 다급 1명 이상의 경찰관을 지정하여 직접·상시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한다.

동 지침 제10조 2항은 따라 나급과 다급은 야간에 귀가한 후부터 다음 날 일과 시작전까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정도의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신변 위해도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보호의 경우 경찰관 1명이 여러 명의 보호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다. 간접·비상시적 방법 및 근무내용 기록유지(사망·형사입건·주소이전 등)신상변동 사항을 확인 및 특이사항 파악)하도록 동지침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보호 대상자 중 테러 등 신변위해가 예상될 경우에 한해 특별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기관장은 신변위해 가능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변보호 계속여부 및 보호등급 조정의 필요성을 경찰청장에게 보고(제13조)하도록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관련 동향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신변보호기관장은 신변보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특별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으로 정기동향 보고서를 4부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3부 보고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매월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2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보호대상자의 경우 일정한 양식에 의해 보고서 4부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날 5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3부 보고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2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 사망, 이민, 행방불명, 형사입건, 해외여행과 불순운동 등 기타 특이사항 발견시에는 일정 양식에 의해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을 경유,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 지침 21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신변보호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들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를 보안경찰관이 담당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과중현상을 겪고 있다.

현재 1만 5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700여명의 보안경찰관으로 신변보호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전입, 전출, 출입국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있으며, 관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거주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 지침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안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제를 간소화시키고 대신 ‘지역사회 정착가이드’ 를 적극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초기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관리는 총체적으로 통일부에서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노동부, 건교부 등 부처별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업무의 유기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 주거, 신변,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총체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보안경찰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및 다단계 등 유사수신에 쉽게 유혹되고 정착금을 탕진하는 등 정서불안 등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북한을 탈출할 만큼 자아의식이 강하나 자신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좌절을 겪게 될 경우 저항의식으로 나타나 부적응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법적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대부분 남자경찰관이 담당하고 신변보호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 방안

제1절 초기교육 강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보호단계에서부터 초기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하나원」의 조직체계와 시설을 현실에 맞게 확대 개편시키고 통일 후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와 밀접하게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하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3개월의 소양교육으로는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전문 직업훈련을 습득하는데 매우 부족하다.¹⁰⁶⁾

따라서 「하나원」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조직체계와 규모, 시설을 현 실정에 맞게 확충시키면서 사회적응 교육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개편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⁰⁷⁾

둘째는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응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이론과 현장학습을 병행한 현실적응 교육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6) 서독의 경우에도 동독을 탈출한 동독인에 대해 비상 수용소와 임시숙소에서 1년간 수용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07) 하나원은 소장, 여직원 및 방호원을 제외한 15명이 3교대로 당직 및 생활지도관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월 10일정도 귀가가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가중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사회의 이해와 정서 순화 및 심리안정, 현장체험학습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직업훈련을 강화시켜야 한다.

시설보호단계에서부터 직업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이들이 1가지 이상의 전문자격기술을 소유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의 성공적 정착은 그만큼 앞당겨 질 것이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은 단기반과 장기반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반의 경우 3~6개월, 장기반의 경우 6개월 또는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직업훈련학교를 단독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민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적응·정착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기본 방침과 재정적인 측면을 지원해 주고, 민간기관이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직업교육 등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준다면 예산의 절감과 교육의 극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그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고, ② 민간기관은 명확한 지원사업의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객관적인 평가방법 등의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고, ③ 민간기관들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때 가능할 것이다.¹⁰⁸⁾

이와 함께 교육, 훈련, 상담, 관리 등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틀을 보완해 나가는 문제도 변형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사회적응교육이 양적·형식적 교육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질적인 교육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은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108) 김성호,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대안보고서』 (2001.9), 28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팽배해져 있다.

더구나 상용한자나 영어교육 등은 단시간 내에 소통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절차적인 꾸준한 학습이 요구된다. 또한 중복된 교육을 피하고 장시간 교육으로 인한 지루함과 권태감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교육대상자들이 선호하는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나갈 때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 연령, 직업, 학력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목을 설정하고 교수진을 편성하여야 한다. 교수진 자신들도 북한의 실상과 북한 이탈주민들의 성향 및 지식수준에 맞게 강의교안을 준비하여 추진한다면 이들과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교육의 질적 효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사례를 본보기로 내세워 교육하고, 가치관의 차이, 도덕과 규범, 시장경제 등에 대한 학습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생들의 사회적응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상·벌 제도를 강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훈련 등에서 타의 모범을 보인 교육생들에게 외출, 견학 등 포상을 실시하고, 퇴소 후에는 취업 및 주거지 우선 배정, 정착가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이 현저하게 불량한 교육생에게는 교육생활 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들에게는 일정기간 외출과 현장견학을 불허시키면서 퇴소 후에도 정부의 지원을 일정기간 후순위에 두는 등 제재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면 교육열의를 한층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정착 지원방안 개선

1. 정착지원금

① 정부의 지원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외 정세 변화에 편승하여 정착지원 제도를 신축성 있게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적응력 제고와 자본주의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생산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중점을 두면서 형평성의 원칙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② 정착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의 정착지원금으로는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비도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이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국민총생산량에 비해 적정한 수준에서 채택되었는지, 또한 이들이 지급받고 있는 정착지원금이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정착지원 방안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이 특혜적 지원보다는 현실에 적합한 사회화와 체제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사회복지 재단을 출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를 일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금으로 사회사업을 지원하고 일정금액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연금형식으로 일정한 기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재단의 출현문제는 국가의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한 증가와 이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규정의 개정과 함께 제도적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을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정부주도에서 민간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때 현실에 적합한 지원정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2. 취업 및 주거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과 주거지원은 「하나원」 퇴소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력 하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① 취업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보호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수준과 기술능력,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알선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진출 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순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직업교육 보다는 희망하는 업체에 취업하여 해당업체에서 직업훈련을 실시¹⁰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그동안 ‘취업보호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로 전입하여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의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고용지원금’ 제를 악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채용한 후 2~3년간 고용한 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고용지원금’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들을 퇴사시키고 있는 옳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시급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문제를 노동부가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후원회 등의 긴밀한 협력으로 종합적인 취업대책을 마련하고 ‘취업보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주거지원을 사회진출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주변의 임대주택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재는 대단지 주거지역 중심으로 13~25평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으로 1,3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범위에서 주거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시

109) 직업훈련 내용은 ① 직업능력 평가-적성검사 및 기능평가, ② 직업기술 훈련-직업훈련원에서 실시, ③ 직업적응 훈련-보호작업장에서 실시, ④ 현직 훈련-연수생 및 인턴사원, ⑤ 사후적응 지도-전직 포함 등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93면.

적으로 단독주택과 빌라,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후 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들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안정적 주거정책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원」 퇴소와 동시에 거주지 문제를 선행하여 해결하고 세금 감면, 일정기간 임대아파트 입주 후 저금리 용자로 분양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지 배정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직업 및 사회적응 훈련의 성과 정도에 따라 집단수용→분산합숙→개별거주의 순서를 따른다.

② 집단수용을 위하여 군·경 수용시설이나 종교·사회단체의 합숙시설을 이용한다. 탈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수용시설을 건설한다.

③ 분산합숙이나 개별거주를 위하여 임대아파트, 근로자복지주택, 주택구입 자금융자 등을 고려한다. 희망에 따라 농어촌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④ 가구, 침대, 식기, 의복 등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종교·시민단체를 통해 신품을 기증받거나 중고품을 수집해 보급한다.¹¹⁰⁾

110) 김동배,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서울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1996), 81~82면.

3. 교육 및 사회보장지원

①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상급학교 진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는 재북 당시 학력을 인정하여 편입학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② 대학진학 문제를 만 35세 이하로,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로 제한시키고 있는데 이를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접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대학진학 문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경제적 토대를 구축한 후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제한 조치를 강구하기 보다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지원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학협동의 유기적인 결합 속에 야간대학 및 통신대학, 전문대학 등에 진학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부여를 통해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시키고 이들의 교육기간에는 정부가 기초생활대상자로 지정하여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등 이북5도민회와 시민·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초, 중, 고 진학 청소년의 경우 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지도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퇴직교사의 자원봉사 제도를 일정기간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③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는 취업 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해 주고 퇴사 후 또는 일정 단계 이하의 생활대상에 대해서 생계급여와 의료 혜택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3절 심리적 불안정 해소

북한이탈주민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요소를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고, 각종 지원정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신도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한의지를 가질 때 심리적 불안정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정부의 지원정책이 보다 합리적 방향으로 추진되어 경제적 안정을 선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이 1회성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자활능력을 꾸준히 제고시켜 나가면서 이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가족과 친지에 대한 피해의식과 신변 위협으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사회 적응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각종 친목단체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종교단체, 직장 등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시민단체, 국민들과의 유기적인 다양한 행사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연극·영화보기, 음악회 초대, 무용발표회, 박물관 및 고궁 견학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축구, 사격, 유도, 탁구 등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한국생활을 동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③ 심리적 불안감과 좌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심리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심리적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심리상태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사회정착 지원활동의 하나로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한가족 결연사업과 보안협력위원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사업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이 빈약한 상황에서 각 기초단체의 시·군·구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거주지별 결연관계를 맺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와의 사회적 연계체제를 수립하여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이탈주민들과의 통로를 열어준다면 심리적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④ 한국 국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에 상호 선입견·오해·편견 등을 버려야 한다.¹¹¹⁾

⑤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정서적인 불안정을 해소시키는 지름길의 하나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미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결혼 정년기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결혼상담 전담기능도 필요하며, 종교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와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⑥ 북한이탈주민의 호칭을 개칭해 나가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란 호칭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배신자, 이탈자, 도망자, 변절자, 반동분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퇴된 자 등 부정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호칭을 평범하게 월남자, 월남이주민, 자유북한인 등 적절한 호칭으로 바꾸어 주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111) 민성길, “남북한의 갈등해소 방안, 민성길 외,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 연세대출판부, 2002), 244면.”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관리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경찰의 새로운 관리 패러다임이 형성되어야 한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부적응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행동으로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위장 망명 및 대북접촉 등을 행하고 있어 국가안보 환경에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¹²⁾

특히 유럽지역이 새로운 망명지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자로 신분을 위장하여 위장망명하고 극빈자로 전략, 난민신청 등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여 왔다.

또한 국내법상 브로커¹¹³⁾를 처벌할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보완대책과 아울러 적극적인 통제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안경찰의 신변보호와 관리업무의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법규의 개정과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에 1천명¹¹⁴⁾이 넘는 공적 인력을 투입하여 이들의 정착지원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해 나

112) 일부 북한이탈주민 집단세력화로 각종 선거 개입과 대정부투쟁, 재북가족 경제지원 및 탈북지원 목적으로 중국 등에서 구입한 휴대폰을 구입하여 전달하고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기전달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재북가족과 직접통화하고 있다. 더구나 1개월 이상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이 500여명을 넘어서고 있고, 유럽지역에는 영국 45명, 노르웨이 6명, 독일 1명 등 총 62명의 탈북자가 위장 망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3) 브로커와 탈북자들간 민사소송은 탈북자에 대한 협박과, 갈취, 여권 등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되고 있음.

114) 현재 신변보호담당관 700여명, 거주지보호담당관 211명, 고용안정센터 53명, 통일부 100여명(하나원, 정착지원국)이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 지원 ·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가 지원 ·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신변보호, 노동부→취업, 행안부 · 국토해양부→주거보호 업무로 한정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해야 한다.

또한 부처간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책임자 1명을 통일부에 파견하여 이들로 하여금 관할 부처 또는 지역별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현재의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업무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2중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일반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기간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700여명의 보안경찰이 1만 5천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업무의 범위를 과감하게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신속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하나원」의 교육기간을 토대로 1차적인 신변보호기간을 3개월의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간에 사회적응에 큰 문제점이 없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종료시키고, 사회적응에 문제가 있는 일부 대상자를 2차적으로 3개월 연장시켜 신변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대상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신축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신변보호·관리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안경찰의 인력의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고 업무의 과중현상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신변보호 기간단축으로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보안협력단체나 정착도우미를 활용하여 해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① 보안경찰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리임무에 정통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야 한다.

② 신변보호 대상자의 활동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보안경찰의 업무수행에 있어 미숙한 측면을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안경찰관들은 직접 또는 통·반장들과 지역유지 등 정보원을 통해 이들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안유지가 되지 못하여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주위의 관심이 집중되고 은신폭이 줄어든 상황에서 보안경찰에 관한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조치들이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2006년 8월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효립 특별 리서치에 의하면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미국으로 망명을 택한 자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명은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자들이며 한국정부의 박해와 감시, 한국인의 차별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살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야 할

만큼 심각한 이들에 대한 박해와 차별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¹¹⁵⁾

③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의 요소들을 사전에 감지하여 차단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을 퇴소 이후 제일먼저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것이 보안경찰관과의 만남이다.

따라서 보안경찰이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보안경찰은 이들에게 한국사회의 실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육자로, 때로는 안내자로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면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은 그 만큼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과 성별, 학력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여성 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여경을 지정하여 보호·관리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115)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서울 : 한국학술정보주, 2007), 210~211면.

제5장 결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방안과 보안경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와 유형, 경로 및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① 먼저 탈북의 주요 동기는 1995년 이전시기에는 정치 이념적 성향의 탈북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후시기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존권적 차원의 탈북이 주요동기로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이탈 현상은 동구권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이념의 동요와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사회혼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국제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기강의 해이, 외부정보의 유입 등으로 가속화되었다. 앞으로도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② 탈북의 유형을 단순탈북과 장기체류 유형의 탈북, 현지에 정착하여 생활하려는 탈북으로 나누어 정밀 분석 하였다.

단순탈북의 경우에는 15일~90일 정도 중국으로 월경하여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한 후 귀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지 체류 유형의 경우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현지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체류의 경우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두만강과 백두산유역을 주요 탈북경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겨울철을 이용하여 압록강 중·상류지역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과 태국, 몽골, 미얀마 등을 경유한 국내 입국이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③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의 총 규모를 3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 중 국내로 입국한 1만 5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감안한다면 해외지역에서 은신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가 1만 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실태 및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였다.

① 정착지원의 문제점으로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정착지원금의 차등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시설보호단계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과 인력, 시설배치의 한계 및 취업, 주거지원이 사회진출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교육지원에서의 연령과 거주지 기간의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②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들의 신변위협,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 한국사회와 국민의 무관심 등으로 인한 고독감과 소외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정을 문제점으로 밝혔다.

③ 경제적 측면에서는 취업, 주거, 소득부분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먼저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적응이 매우 어렵고 낙관적이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거생활에서 서울 및 대도시 중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15평을 전후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권익보호를 위한 행동으로 조직적인 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위장망명 등 국가안보환경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장기간 또는 영원히 영세민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세대 당 소득이 100만원 정도로 한국의 최하위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④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보안경찰의 신변보호 및 관리업무가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인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밝히고, 현재의 신변보호 지침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셋째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방안을 초기교육 강화, 정착지원방안 개선, 심리적 불안정 해소,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① 초기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하나원」의 조직체계와 시설을 현실에 맞게 확대 개편시키고, 통일 후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와 밀접하게 병행시키면서, 사회적응 교육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② 정착 지원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착지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고, 정착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규정의 개정과 제도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취업 및 주거지원을 「하나원」 퇴소와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교육지원에 있어서 연령과 보호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시켜 나갈 것과 사회보장제도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확대 실시를 바람직한 정착지원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③ 심리적 불안정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보다 합리적 방향으로 추진되어 경제적 안정을 선행시켜 나가야 하며, 심리적 불안감과 좌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심리상담소 설치 운영, 한국사회와 국민의 편견과 오해, 선입견 불식, 북한이탈주민들의 호칭 개선,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와의 사회적 연계체제를 수립하여 참여와 대화의 통로를 열어줄 때 이들의 심리적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④ 북한이탈주민들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개정 보완하고 보안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을 강구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에 1천명이 넘는 공적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변보호기간의 단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보안경찰이 신변보호·관리업무에 정통하고, 신변보호 대상자의 활동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나갈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국가안보의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감지하여 차단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더구나 보안경찰이 이들의 사회정착에 있어 교육자 안내자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이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이 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 바람직한 정착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경찰의 업무범

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는 한국 정부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문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대책방향. 서울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998.
- , 탈북자 대책 및 정착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
- 김경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정착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경호, “새터민 정착지원체계의 대안적 모색”, 대한정치학회보. 13(3), 2006.
- , “새터민의 사회정착 지원책에 관한 고찰”, 부산 : 이경, 2006.
- 김광호, “탈북자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동배,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서울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1996.
- 김명기,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보호 및 실효적 지원방안, 1999.
- 김문수, “탈북에서 입국까지”, 탈북자입국지원 법률개정 자료집. 2004.

- 김성윤, “새터민 정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동북아논
총 38, 2006.
- 김성호,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
한 대안보고서. 2001.9.
- 김영수 · 정영구, 탈북귀순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서울 : 통일
연수원, 1996.
- 김영만,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자(새터민)들의 적응실태. 한국학술정
보, 2005.
- 김주삼, “북한 이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통일전략 제6권,
2004.
- 김중태, “탈북후 국내적응 훈련의 현황과 실태”, 시민과 변호사 통권
104호, 2002.
- 김치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정책과 민간단체의 대응전략”, 통
일전략 제3권 2호, 2003.
- 김학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현호, “북한이탈주민 탈북사태의 원인과 대책”, 북한은 변화할 것
인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세미나 주제발표 논문, 1996. 3.
25.
- 길강섭, “북한이탈난민의 귀환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문국재 외,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2000.
- 민성길, “남북한의 갈등해소 방안, 민성길 외,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

- 을 : 연세대출판부, 2002.
- 박미석 · 이종남,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 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통일논총 제17호, 1999.
- 박상봉, “대량탈북 사태와 국가대응전략”, 군사세계 통권 84호, 21세기군사연구소, 2002.
- 박종철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박현선,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1호, 2002.
- 백영옥, 북한이탈주민 대책연구. 경기 성남 : 세종연구소, 1998.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 북한연구소,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서울 : 북한문제연구소, 1995.
- 서윤환, “탈북자 정착지원종합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북한학보. 2000. 11.
- 손주환, “북한이탈주민은 국제법상 난민이다”, 1999.
- 송경호, “김정일정권의 대남전략 및 추진양상”, 2005 연구보고서. 경기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05.
- , 탈북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개선방안, 공안연구. 경기 용인 : 공안문제연구소, 2001.
- 연합뉴스, 2001 북한자료 · 인명편. 서울 : 연합뉴스, 2000.
- 오기성, “통일대비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문제연구”, 공안연구 제9권 제2호. 경기 : 공안문제연구소, 1997.
- 오효림, 월간중앙. 2006. 8.

- 유석렬, “일탈 : 원인 · 유형 · 통제방법” ,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
- 윤덕룡 · 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
- 윤여상, 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서울 :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 ,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 세명, 2001.
- , “재외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8.
- , 재외 탈북자. 열린포럼 21, 2001.
- 윤인진, “북한이탈주민 적응은 민족통합의 과제” , 자유공론 제450권, 2004.
- 이기영, “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
- 이금순, “탈북자의 인권현황과 국제사회의 역할” , 이제는 북한인권을 말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 심포지엄, 2005.9.23.
-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정책과제” ,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 자료 35, 2004년 6월.
- ,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99-02.
-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프로그램 연구” , 서울 : 통일원, 2005.
- 이영선 · 정우택,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서울 : 오름, 1996.

- 이장호, “북한이탈주민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상)”, 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1997년 11월호.
- 이종훈, “남한 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
분석 제119호, 1996.
- , “탈북자 난민지위 획득방안 및 실천방안”, 2000.
- 이하섭, “보안경찰의 탈북자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 : 동국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호진, “최근의 탈북자 현황과 정책”, 외교 53, 2000.
- 임종석,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의제일 뿐이다”, 2004 정기
국회 정책자료집 8. 2004.
- 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법학 17, 2000.
- 정주신, “국내의 탈북자 실태와 정부의 과제 :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
로”, 통일전략 제3권 제2호, 2003.
- , 탈북자 문제의 인식. 서울 : 한국학술정보주, 2007.
- 장혜경 · 김영란, “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전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2001.
- 전우택 외, “탈북자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의 삶 : 문제
와 대책. 서울 : 오름, 1996.
- ,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 분석”, 서울 : 연
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0.
- 제성호, “북한탈출 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1994.
- 조용관, “보안경찰 탈북자 관리능력 제고 방안”, 공안연구. 경기 용
인 : 공안문제연구소, 2001.

-----,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과 통일의 과제”, 통일문제의 국제 관계 제11집, 1999.

최창동, “탈북자의 법적 지위”, 2002.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실무편람. 서울 : 통일부, 2001.

-----,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및 정착지원제도”, 서울 : 통일부, 2008.5.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서울 : 통일연구원, 2000.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 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한만길, “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제5권 2호, 1996.

홍양호, “탈북자 정착지원의 기본방향”, 북한 통권 356, 2001.

2. 외국문헌

Merton Robert K & R. Nisbet (ed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p. 824.

Becker,, H.S., Outsiders :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New York : Free Press, 1963).

3. 기타자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

동아일보, 1999.10. 17.

-----, 2002. 8. 17.

-----, 2005. 6. 5.

중앙일보, 2004. 7. 28.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책임연구보고서 2009-07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 2009년 6월 30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